

# 메가아시아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전과 쟁점

## RCEP in the context of Mega Asia

사회: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개회사: **신범식**(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좌장: **이윤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전 대사)  
 발표: **오수현**(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  
       : RCEP의 주요 내용과 의의  
       **김양희**(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전망과 과제  
       **박종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RCEP의 출범과 동아시아무역구조의 변화  
 토론: **이왕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  
 토론에 대한 발표자 답변  
 청중 또는 유튜브 시청자 질문 및 종합토론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 사업단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14:00~17:30  
 방법: 발표자와 토론자 대면 진행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https://www.youtube.com/snuacmedia>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메가아시아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전과 쟁점

## RCEP in the context of Mega Asia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 사업단 (메가클 운영)
- 일시: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30분**
- 방법: 발표자와 토론자 대면 진행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 장소: 영원홀

I. 사회: 최경희		
개회사 2:00-2:10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II. 좌장: 이운영 전 대사		
발표 1 2:20-2:50	오수현 (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	RCEP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발표 2 2:50-3:20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전망과 과제
발표 3 3:20-3:50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RCEP의 출범과 동아시아무역구조의 변화
토론 3:50-4:50	이왕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 서정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표자 답변 4:35-4:50		
청중 또는 유튜브 시청자 질문 및 종합토론 (4:50-5:20)		

# RCEP의 주요 내용과 의의\*

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RCEP 협상 타결과 정식 서명

지난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을 하였다. RCEP은 2015년 협상 종결을 목표로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해 왔으나, 타결이 매년 연기되어 오다 8년간 31차례 공식 협상 및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2019년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 후 시장 개방협상 등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020년 11월 정식 서명을 하였다.

RCEP 협상에 참여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으로,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현재 참여국이다. RCEP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FTA로, 거대 규모의 지역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해 왔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 논의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각각 ASEAN+3(한,중,일), ASEAN+6(한,중,일,호,뉴,인도) 형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여 RCEP에 앞서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 중에 2011년 ASEAN이 ASEAN+6 체제인 RCEP을 제안하여 ASEAN 주도의 협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중국이 제안하였던 ASEAN+3 형태의 EAFTA 협상이 좌절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은 RCE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타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 또한 협상 마무리에 기여를 하였는데, 협상 막바지

\* 본 자료는 2021 FTA 무역리포트 vol.33에 실린 「RCE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체결 의의」 및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 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0), KIEP-AMR 세미나 자료(2021)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email: shoh@kiep.go.kr

단계에서는 비(非)아세안국 조정국(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며 원산지 등 주요 쟁점을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p.2) 한편 인도는 RCEP 출범 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지만 상품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차이로 2019년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하여, 정식서명에는 15개국만이 참여하였다.

## 2. RCEP의 경제 규모 및 참여국 간 무역 관계

RCEP은 한국이 참여한 최초의 메가 FTA이며, 최대 규모의 FTA라 할 수 있다. RCEP 참여국의 총 무역규모는 2019년 기준 5.4조 달러에 달하며, GDP 합계는 26.3조 달러 규모로, RCEP 참여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생산, 무역규모 및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다른 지역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그 규모를 비교해보면, 11개국 이 참여한 CPTPP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생산의 약 13%, 무역규모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RCEP은 가히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개정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경우 GDP 총 규모는 전 세계 대비 27.9%에 이르지만, 무역규모는 13.6%가량을 차지하여 RCEP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RCEP의 경제 규모

구분	무역규모		명목 GDP		인구	
	조 달러	전세계 비중	조 달러	전세계 비중	억 명	전세계 비중
RCEP	5.4	(28.7)	26.3	(30.0)	22.6	(29.9)
USMCA	2.5	(13.6)	24.4	(27.9)	4.9	(6.5)
CPTPP	2.9	(15.3)	11.3	(12.9)	5.1	(6.7)

주1: 2019년 기준, 단위: 조달러, %.

주2: 인도는 RCEP 국가에서 제외함. 인도 포함시 무역과 GDP 규모는 전세계 대비 30%를 상회하며, 인구합계는 약 47%에 달함.

자료: IMF, 재인용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p2

한국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규모는 한국 총교역의 48%, 수출은 49.6%, 수입은 46.3%를 차지한다. RCEP 참여국 가운데 한국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국가는 중

국으로 수출입 모두 대RCEP 국가 총계 대비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역이 많은 국가는 아세안,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의 대RCEP 회원국 수출입 현황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출			수입		
	금액	RCEP 내 비중	세계 비중	금액	RCEP 내 비중	세계 비중
중국	136,203	47.9	25.1	107,229	45.0	21.3
아세안	95,086	33.5	17.5	56,186	23.6	11.2
일본	28,420	10.0	5.2	47,581	20.0	9.5
호주	7,891	2.8	1.5	20,608	8.6	4.1
뉴질랜드	1,392	0.5	0.3	1,300	0.5	0.3
대RCEP 총계 (인도 제외)	268,992	94.7	49.6	232,904	97.7	46.3
대세계 총계	542,233			503,343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RCEP 국가들의 GVC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중일 간 분업구조는 매우 발달하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이 한중일 생산 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 (라미령(2017))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 2017년 RCEP의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수출은 약 1조 6,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RCEP 역내 국가 간 가치사슬을 활용한 수출은 약 7,8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표 3. RCEP 역내/역외 수출 부가가치 분해 (2017년)

(단위: %, 십억 달러)

연도	국내부가가치 수출 기여분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			가치사슬 참여도		
	RCEP 역내	RCEP 역외	DVX	RCEP 역내	RCEP 역외	FVA	GVC 참여	RVC 참여	RVC 비중
2007	102.0	95.1	197.0	142.9	102.5	245.4	442.4	244.9	55.4
2017	361.6	373.5	735.1	415.7	444.7	860.4	1,595.5	777.3	48.7

주1: RVC 비중은 RVC 참여분을 GVC 참여분으로 나눈 값임.

주2: ADB-MRIO(2007~2017) 이용하여 분석, 인도 포함.

자료: 오수현, 한형민, 연원호, 이보람, 김지현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p.7.

한국의 RCEP 역내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7년 39.7%에서 48.9%로, 같은 기간 일본은 31.9%에서 43.9%로, 호주는 44.1%에서 63.8%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동 기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2007년과 2017년 사이 RCEP 역내 국가보다 역외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RCEP 국가의 전반적인 대세계 가치사슬 참여도는 증가하였지만, 역내 국가 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바, RCEP의 타결은 역내국 간 가치사슬 연계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RCEP 개별 참여국의 역내 중간재 수출 비중 (2007, 2017년)

(단위: %)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2007	44.1	80.4	29.0	58.1	14.6	31.9	17.0
2017	63.8	77.7	25.4	48.8	20.9	43.9	25.6
	한국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07	39.7	42.1	42.2	41.3	28.3	43.1	66.5
2017	48.9	37.0	56.3	48.2	18.9	46.9	46.7

주2: ADB-MRIO(2007~2017)을 이용하여 분석, 인도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오수현, 한형민, 연원호, 이보람, 김지현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p.8

### 3. RCEP 협정문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가. RCEP 협정문의 구성

RCEP 협정문은 총 2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서비스 교역 뿐 아니라 투자, SPS, TBT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최신무역규범과 중소기업, 협력 챕터 등을 담고 있다.

표 5. RCEP 협정의 챕터 구성

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11장 지식재산
2장 상품 무역	12장 전자상거래
3장 원산지규정	13장 경쟁
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4장 중소기업
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16장 정부조달
7장 무역구제	17장 일반규정 및 예외
8장 서비스 무역	18장 제도 규정
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19장 분쟁해결
10장 투자	20장 최종 규정

자료: 오수현, 라미령, 연원호 (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36, fta.go.kr.

한국은 ASEAN과 한·아세안 FTA를 2007년에 발효하였는데, RCEP 협정문을 통해 한·아세안 FTA에 없거나 의미 있는 조항이 없었던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기술무역장벽 등 통상규범을 독립적인 챕터로 포함시켰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은 총칙, 자유화(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그 밖의 분야, 최종 조항의 5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력 챕터에서 통관 절차, 무역 및 투자 진흥,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SPS 등 다루고 있으나, 19개 분야를 경제 협력의 범위로 지정하는 수준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체결, 발효한 한중 FTA와 RCEP을 비교하면, 협정문 챕터의 구성이 유사하나 환경과 무역, 투명성 챕터가 빠지고 중소기업과 정부조달 챕터를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을 비롯한 RCEP 국가가 참여하였던 TPP와 RCEP을 비교하면, TPP에서는 국영기업, 환경, 노동 및 규제 조화 등 신규범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협정인 USMCA와 비교하면, USMCA에서는 TPP의 국영기업, 노동, 환경 챕터 외에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문제 챕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RCEP, TPP, USMCA 협정문의 구성 비교

RCEP	TPP	USMCA
서문	서문	서문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2. 상품 무역	2.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2. 내국민대우와 상품의 시장접근
		3. 농업
3. 원산지규정	3.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4. 원산지규정 및 상품 특정 원산지규정
		5. 원산지 절차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5. 통관 행정 및 무역원활화	7. 통관 및 무역원활화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7. 위생검역	9. 위생검역
6.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8. 기술무역장벽	11. 기술무역장벽
		12. 분야별 부속서
7. 무역구제	6. 무역구제	10. 무역구제
	10. 국경간 서비스	15. 국경간 서비스
	11. 금융서비스	17. 금융서비스
	13. 통신서비스	18. 통신서비스
8. 서비스 무역		
9. 자연인의 일시 이동	12. 임시 입국	16. 임시 입국
10. 투자	9. 투자	14. 투자
11. 지식재산	18. 지식재산권	20. 지식재산권
12. 전자상거래	14. 전자상거래	19. 디지털 무역
13. 경쟁	16. 경쟁	21. 경쟁정책
14. 중소기업	24.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15. 경제 및 기술 협력	21. 협력 및 능력배양	-
	23. 개발	
16. 정부조달	15. 정부조달	13. 정부조달
17. 일반 규정 및 예외	29. 예외	32. 예외 및 일반 규정
		29. (법) 공표 및 행정
18. 제도 규정	27. 행정 및 제도 규정	30. 행정 및 제도 규정
19. 분쟁해결	28. 분쟁해결	31. 분쟁해결제도
20. 최종 규정	30. 최종 규정	34. 최종 규정
	4. 섬유 및 의류	6. 섬유 및 의류
	17. 국영기업	22. 국영기업
	19. 노동	23. 노동
	20. 환경	24. 환경
	22. 경쟁력과 산업 촉진	26. 경쟁력
	26. 투명성과 반부패	27. 반부패
	25. 규제 조화	28. 모범 규제 관행
	-	8. 탄화수소 제품에 있어 멕시코의 직접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시효가 없는 소유권 인정
	-	33.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문제

주: CPTPP 협정문은 기존에 합의한 TPP 협정문에 추후 추가된 유예조항과 국가별 부속서 등을 포함

자료: 오수현, 라미령, 연원호 (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36, p.17 인용

원자료: fta.go.kr(RCEP 협정문); 조문희 외(2018),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6,

RCEP 협상은 많은 국가가 참여한 만큼 협상 개시에서 서명에 이르기까지 8년 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RCEP 협정문이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협정인 점도 있지만, 상품 양허에 있어 공통양허 또는 개별양허, 서비스 양허에서 열거주의, 포괄주의 등 모달리티에 대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까닭도 있다. 결과적으로 상품 양허 방식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공통양허 형태로, 그 외 국가들은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개별양허 형태를 택하고 있다. 서비스 개방 방식으로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열거주의(positive list)를, 그 외 국가들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이내)에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 나. RCEP 상품양허와 한중일 상호 시장 개방

RCEP 역내국간 시장 개방은 20년에 걸쳐 90% 이상의 수준의 관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한국의 경우 ASEAN과는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기존에 체결한 한아세안 FTA를 소폭 개선하였고, 비교적 최근 협정을 마무리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체결 양허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의 국별 상품 양허 수준을 살펴보면, 아세안은 한국과 기체결 FTA 관세 철폐 수준(79.1~89.4%) 대비 관세를 추가로 철폐(1.7~14.7%p)하여 최종 관세철폐 수준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였고,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과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국 또한 아세안에 관세를 추가로 철폐(1.3~4.3%p)하였는데, 농, 수, 임산물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분류하고, 열대과일, 두리안, 파파야, 뱀장어, 게 등 품목에 대해 10~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존의 한 호주 FTA, 한 뉴질랜드 FTA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양허한 바 있어, RCEP에서는 기타어류 등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또한 2015년 12월 한중 FTA를 발효하였으며, 당시 한국은 중국

에 품목수 기준 92% 수준에서, 중국은 한국에 90.6%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 바 있다. RCEP에서는 기체결 FTA 철폐 범위 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소폭의 추가 양허를 하였는데, 한국은 텍스트린, 녹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철강, 기계류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여 91.1%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번 RCEP 협상을 통해 한국은 일본과 신규로 시장을 개방하였는데, 관세철폐율은 한일간 상호 83%로 높은 수준은 아니나 자동차, 기계 관련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재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 위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농산품에 대해서는 한국 46%, 일본 49%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공산품에 대해서는 한국 91.7%, 일본 94.1%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주요 관세철폐 품목은 한국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증유, 정밀화학원료, 맥주 등이며, 일본은 합성수지, 소주 등 증류주, 정밀화학원료 등이다.

상품양허 측면에서 RCEP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이 신규로 상호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FTA는 한일 FTA, 한중일 FTA 등 다양한 포맷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는데 RCEP을 계기로 일본과 최초로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중국 또한 RCEP을 통해 일본과 최초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기준 86% 수준으로, 일본은 중국의 농산물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공산품 위주로 새롭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한중일 3국의 교역관계는 매우 긴밀하나 3국이 모두 참여한 FTA는 기존에 없었으므로, RCEP을 통해 한중일 간 경제협력 채널을 형성하고, 이를 추후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데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신통상규범의 도입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도 기체결 FTA 수준을 유지하되 ASEAN은 문화콘텐츠, 유통, 물류 서비스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였고, 일본은 온라인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투자 챕터에서는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규정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발효 이후 협상 과제로 남겨두었으며, RCEP 당사국들과 기존에 체결한 내용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

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챗터에서는 아세안 개별 당사국이 정부조달에 대한 규범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기로 하여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CEP은 신통상규범인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챗터 또한 포함하고 있다. RCEP 전자상거래 챗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그 이용에서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종이 없는 무역, 전자 인증 및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국경간 무역을 촉진하는 조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포함하였다. 공공 정책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① 컴퓨터 설비를 자국의 영역 내에 설치할 것(data localization)을 요구하거나 ②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free flow of data)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CPTPP 협정의 규범을 유사하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챗터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보호규범을 마련하였다. 악의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출원 거절 의무, 부분디자인 보호,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일부 분야에서는 CPTPP 등 최근 통상규범과 유사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 및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재권 침해 시 구제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설명자료).

## 라. 원산지 규정을 통한 스파게티 불 효과 완화

양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이른 바 스파게티 불 효과를 메가 FTA에서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꼽히는 바,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그동안 양자 FTA에서 체결한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하

나로 통합하고, 역내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 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스파게티 볼 효과의 해소는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누적조항 또한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의 누적조항은 CPTPP의 완전누적 조항과는 달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누적이 인정하지 않지만, 협정문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 발효 후 누적 적용 확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40%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역내가치비율(RVC) 기준, 세번변경(CTC) 기준, 특정 제조나 가공공정, 또는 이들 조합 중에서 선택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의 수출자가 어떤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역내 가치비율 40%는 기존의 FTA 규정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활용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모든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 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RCEP에서의 이러한 원산지 증명, 신고 절차의 간소화 또한 RCEP 내 지역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 4. RCEP의 의의

RCEP은 통상적인 비준 절차를 고려하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경에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의 발효를 위해서는 아세안 서명국 중 6개국 이상의 국가와 비(非)아세안 서명국 중 3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완료 60일 후 비준을 마친 국가 간에 협정이 발효되게 된다. 현재까지는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일본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다.

RCEP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존의 양자간 FTA와 소규모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우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여러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생산구조 하에서 RCEP과 같은 다자간 지역무역

협정은 글로벌 밸류체인 내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된 원산지 규정은 RCEP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과 연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회복기에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CEP은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협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무역의 비중이 큰 RCEP 참여국들은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신규 시장 확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첫 무역협정이므로, 이로 인한 교역 증대와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통한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 RCEP을 통한 한일간 개방의 경우, 민감한 품목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생산 네트워크의 분업구조가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는 일본과 FTA를 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RCEP 참여로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고 이를 향후 다른 메가 FTA 참여 및 한중일 FTA 진전의 디딤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오수현, 라미령, 연원호 (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36.
- 오수현, 한형민, 연원호, 이보람, 김지현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김양희 (2021), “RCEP의 지정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요인”, KIEP 전문가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fta.go.kr>.
-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설명자료.
- 오수현 (2021), 「RCE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체결 의의」, 2021 FTA 무역리포트 vol.33.
- 임병호(2021), 「RCEP 직접운송원칙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FTA 물류허브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Korea Trade Review, Vol. 44, No. 2, April 2021.

##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전망과 과제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김양희(yhekim19@mofa.go.kr)

1. RCEP의 개요와 주요 내용
2. RCEP의 지경학
3. 회원국별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4. RCEP의 발전 방향과 과제

### 1. RCEP의 개요와 주요 내용

#### 가. 개요

2020년 11월 15일 개최된 제4차 화상정상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10개국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2013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지 약 8년 만에 31회의 전체 협상과 296회의 양자협상, 19회의 장관회의, 4회의 정상회의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인도는 2019년 11월 탈퇴하고, 15개국만 서명하게 되었다.

RCEP은 ASEAN이 비ASEAN 5개국과 맺은 5건의 ‘ASEAN+1’ FTA를 하나로 통합한 독특한 시도다. 협정문 1.3조는 “역내국의 개발 단계와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촉진하고 세계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상호 호혜적 경제동반자 틀 수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RCEP 협정문은 20개 챕터에 부록과 양허일정표까지 총 14,367 페이지에 달한다. RCEP의 자유화 수준과 포괄범위는 ‘ASEAN+1’에 비해 전자는 낮으나 후자는 넓어졌으나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나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크게 못 미치고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보다도 낮고 제한적이다. 특히 CPTPP에 포함된 환경과 노동 챕터는 아예 제외되었다. 회원국 간 경제 격차를 반영하여 추후 개방도를 높이거나 이를 위한 논의를 개시하는 built-in 방식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RCEP은 여전히 형성 과정에 있는 협정(living agreement)이라 불린다.

<표 1> 협정문 구성

	챕터		챕터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11	지식재산
2	상품 무역	12	전자상거래
3	원산지 규정	13	경쟁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4	중소기업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5	경제 및 기술 협력
6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16	정부조달
7	무역구제	17	일반 규정 및 예외
8	서비스 무역	18	제도 규정
9	자연인의 일시 이동	19	분쟁 해결
10	투자	20	최종 규정

출처: 산업통상자원부(<https://www.fta.go.kr/rcep/>)

<표 2> 주요 FTA의 포괄범위 비교

챕터	TPP	USMCA	CPTPP	RCEP	AKFTA
Market Access for Goods		0	0		
Agriculture	0	0	0		
Manufacturing		0	0	0	0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0	0	0		
Textiles and Apparel	0	0	0		
Rules of Origin : Cumulation rule	0	0	0	0	X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0	0	0	0	X
Trade Remedies	0	0	0	0	0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0	0	0	0	X
Technical Barriers to Trade	0	0	0	0	X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0	0	0	0	0
Temporary Entry for Businessperson	0	0	0	0	X
Financial Services	0	0	0	0	0
Telecommunications	0	0	0	0	X
Electronic Commerce (Digital Trade)	0	0	0	0	X
Investment	0	0	0	0	0
Competition	0	0	0	0	X
Intellectual Property	0	0	0	0	X
Government Procurement	0	0	0	0	X
Labor	0	0	0	X	X
Environment	0	0	0	X	X
Dispute Settlement	0	0	0	0	0
Regulatory Coherence	0	0	0	X	X
Transparency		0	0	X	X
Anticorruption	0	0	X	X	X
Cooperation	0	0	0	0	0
Development	0	X	0	0	X
State-Owned Enterprises	0	0	0	X	X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0	0	0	0	X
Competitiveness	0	0	X	X	X
Macroeconomic Policies & Exchange Rate Matters	X	0	X	X	X

출처: 김양희, 20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요인”, 『정책연구시리즈』, 외교안보연구소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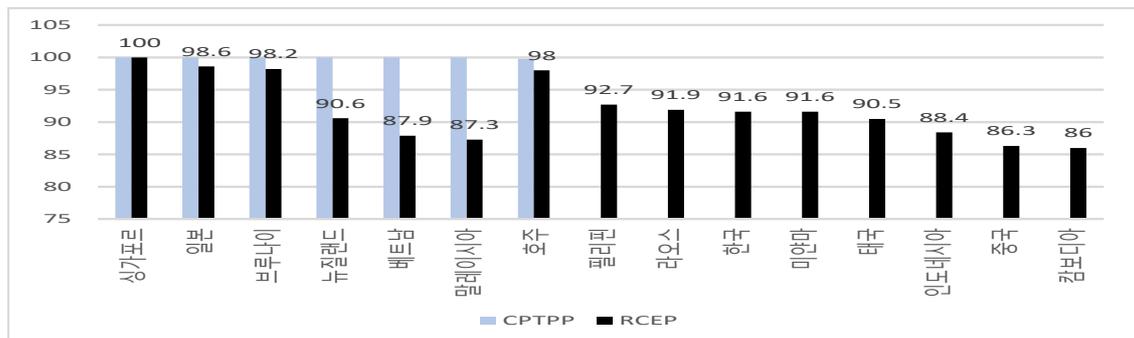
RCEP의 상품시장 양허수준은 ‘20년 이내 관세철폐’ 비중이 품목수 기준 평균 91.5%이다. <표 3>에서 보듯이 회원국별 관세양허 수준은 86~87%(CLM, Cambodia, Laos, Myanmar)에서 100%(싱가포르) 사이에 있다. 평균 92% 양허라고 하나 그 중 83%는 기존 FTA에서 양허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65%는 관세나 쿼터를 철폐한 것이다. ‘ASEAN+1’ FTA 중 유독 AIFTA(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의 양허수준이 80%로 낮아 RCEP의 ASEAN 각국별 양허율이 더 높은 경우는 AIFTA(ASEAN-Japan Free Trade Agreement)의 캄보디아가 유일하다.

<표 3> RCEP과 ‘ASEAN + 1’ FTA의 관세양허 수준 비교

ASEAN	AANZFTA	ACFTA	AIFTA	AJFTA	AKFTA	RCEP	평균
Brunei	99	98	85	98	99	98	96
Cambodia	89	90	88	85	91	87	88
Indonesia	93	92	49	91	91	91	85
Lao PDR	92	97	80	86	90	86	89
Malaysia	97	93	80	94	92	90	91
Myanmar	88	94	77	85	92	86	87
Philippines	95	92	81	97	90	91	91
Singapore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hailand	99	93	78	96	95	90	92
Viet Nam	95	92	79	94	89	89	90
PARTNERS	AANZFTA	ACFTA	AIFTA	AJFTA	AKFTA	RCEP	평균
Australia	100					98	99
China		95				89	92
India			79				
Japan				92		88	90
Korea					90	88	89
NZ	100					92	96
평균	96	94	80	93	93	91	

출처: Iman Pambagyo(2020)

<그림 1> RCEP 회원국별 공산품의 관세철폐율(품목수 기준, %)



출처: 經濟産業省(2020)

RCEP의 국별 양허율(싱가포르 제외)은 모두 ‘ASEAN+1’ FTA보다 낮다. CPTPP에서 공산품 시장을 100% 개방한 7개국도 RCEP에서는 이를 밑돈다(<그림 1> 참조).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87.9%, 87.3%에 그치는바 이는 ASEAN 회원국들이 수출에서 상호 경쟁하기 때문이다(ADB, 2019, pp. 19~20).

<표 4>에서 RCEP의 양허일정을 보면 특히 한중일 세 나라의 즉시철폐율이 낮고 양허제외품목 비중이 높다. 일본의 대한국 관세철폐율은 80.7%에 그치며 즉시철폐율과 양허제외 비중은 각각 63.9%, 18.8%로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역내 최대부국의 위상이 무색할 정도다. 한국도 일본에 대해 83.0% 개방하나 즉시철폐비중은 41.4%에 그치고 제외비중은 17.0%로 일본보다 다소 낮다. ASEAN 회원국 중 CLM의 경우 즉시철폐율은 낮으나 양허제외비중을 최소화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도모한다.

<표 4> RCEP의 상호 상품양허 비중(%)

<표 5> 한중일 상품양허 비중(%)

	tariff elimination	immediatly eliminated	excluded		eliminated to			excluded to
Korea	83.0 (to Japan)	41.4	17.0	<b>Japan</b>	<b>C+K</b>	<b>C</b>	<b>K</b>	<b>C+K</b>
	86.0 (to China)	50.4	12.9	total	80.1	5.5	0.6	13.9
(KC FTA)	92.2 (to China)	49.9	7.0	primary products	46.4	9.3	1.3	42.9
China	86.8 (to Japan)	25.0	13.6	manufacturing	92.7	4	0.3	2.9
	86.0 (to S.Korea)	38.6	13.0	general machine	100	0	0	0
(KC FTA)	90.7 (to S.Korea)	20.1	7.8	electrical equipment	100	0	0	0
Japan	85.5 (to China)	55.2	14.5	transport machine	100	0	0	0
	80.7 (to S.Korea)	63.9	18.8	precision equipment	100	0	0	0
	87.8 (to others)	73.4	7.9	<b>China</b>	<b>J+K</b>	<b>J</b>	<b>K</b>	<b>J+K</b>
Australia	98.30	75.3	0.7	total	84.4	1.6	1.6	12.4
NZ	91.40	65.2	0.0	primary products	81.7	2.1	3.7	12.4
Brunei	97.80	76.5	1.0	manufacturing	85	1.4	1.1	12.4
Malaysia	90.00	69.9	1.2	general machine	82.7	3.9	0	13.4
Singapore	100.0	100.0	0.0	electrical equipment	79.9	2.3	1	16.8
Vietnam	87.5 (to Japan)	65.9	4.0	transport machine	46.8	4.4	6.4	42.4
Cambodia	87.10	29.9	3.8	precision equipment	93	0	1.2	5.8
Indonesia	89.4% (to Japan)	65.1	5.7	<b>Korea</b>	<b>J+C</b>	<b>J</b>	<b>C</b>	<b>J+C</b>
Laos	86.0	29.9	2.1	total	83	0	3	14
Myanmar	86.0	30.0	2.0	primary products	46.2	0	15.5	38.2
Philippines	91.1 (to Japan)	71.3	2.0	manufacturing	91.5	0	0.1	8.4
Thailand	88.5 (to Japan)	66.3	7.4	general machine	86.2	0	0.2	13.5
				electrical equipment	98.3	0	0	1.7
				transport machine	44.8	0	0	55.2
				precision equipment	99.5	0	0	0.5

출처: 久野新, “RCEPを通じた日中韓の貿易自由化: 到達点と課題”, 『ERINA REPORT PLUS』 No. 161 August 2021

한중일 삼국 간 상품양허 실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 1차 산품과 공산품을 각기 46.2%, 91.5% 양허하고 중국에만 추가적으로 전자와 후자를 각각 15.5%, 0.1% 개방하여 대중 개방 수준은 전자와 후자 각각 총 61.7%, 91.6%가 된다. 반면 일본에만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전무하다. 공산품의 개방 수준은 정밀기기가 99.5%로 가장 높고 운송기계는 44.8%만 개방하고 중일 모두에 개방제외한 비중이 55.2%에 달해 세 나라 중 이 비중이 가장 높다(<표 5> 참조).

중국은 한일 양국 모두에 농림수산물과 공업제품 각각 81.7%, 85.0% 양허하였고 한국에만 전자 3.7%, 후자 1.1%를, 일본에만 전자 2.1%, 후자 1.4% 양허하였다. 종합하면 한국에 전자 85.4%, 후자 86.1%, 일본에 전자 83.8%, 후자 86.4% 양허하여

1차산품은 한국에 더 개방했고 공산품은 일본에 조금 더 개방하였다. 그러나 공산품의 양허 내역을 살펴보면 정밀기기 개방폭이 93.0%로 가장 높고 운송기기 개방폭이 46.8%(개방제외 42.4%)로 가장 낮다. 특히 한국에 대해 운송기기는 더 개방하고 일반기계는 덜 개방해 높아 제조업 전반에서 일본보다 한국에 대한 개방수준이 낮다.

일본은 한중 양국에 대해 1차산품과 공산품 각각 46.4%, 92.7% 양허해 전자의 개방 폭이 이례적으로 낮다. 일본이 한국에만 개방한 것은 전자와 후자가 각각 1.3%, 0.3%인 반면 일본에만 개방한 것은 9.3%, 4.0%로 이를 종합하면 한국에 47.7%, 93.0%, 중국에만 개방한 것은 55.7%, 96.7%로 중국보다 한국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세임을 보여준다. 단 일본은 공산품 중 한국과 중국의 4대 수출품목 모두 애초에 무관세 품목이 많은 만큼 100% 개방하였다.

RCEP-ROO는 재료누적(diagonal cumulation), 공통 '품목별 원산지규정(PSR)', 자율원산지증명을 중핵으로 한다. 단, '완전 누적(full cumulation)'은 전 회원국 발효 후 개정협상을 개시해 5년 내 완료해야 한다. 공산품의 PSR은 HS-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주를 이루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RVC(RVC)는 40%로 통일하였다.

서비스 무역은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 이행요건(PR) 부과금지 등이 적용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MA는 GATS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금융 서비스는 신형 금융서비스, 금융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중국은 최초로 생명보험 및 증권 서비스에 관한 외국인 출자비율 제한 규제 철폐 등을 단행하였다. 각 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발전격차를 감안하여 양허 방식은 포괄주의(NL)와 열거주의(PL)를 병용하였다. NL과 '현재 유보'에 역행방지조치(ratchet)를 채택한 나라는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다.

투자 챕터는 투자보호, 자유화, 투자 촉진 및 원활화의 내용을 담았다. NT, 최혜국대우(MFN)(CLM 제외), 공정공평대우(FET), PR(일부 CLM 제외), 고위경영진·이사회 국적요구 금지(SMBD)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와 달리 투자에서는 모두 NT, MFN, PR, SMBD에 대하여 NL과 랫치를 채택했다. 중국은 FTA 최초로 투자에 랫치를 적용하고, 설립 전 투자에 NT 부여, PR을 포함시켰다. 투자자-정부간분쟁중재(ISDS)는 뉴질랜드의 강력한 반대로 제외하는 대신, 수용 규정만 본문과 부록에서 상세히 다루고, 발효 2년 내, 논의 개시 후 3년 내에 회원국 동의 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는 전자송신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였으나, TPP의 디지털 무역 3대 요소 중 컴퓨터 관련 설비의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정보의 국경간 이동(free flows of data) 방해 금지만 도입했는데 이는 중국 최하다. 정부조달 챕터는 중앙정부만 대상으로 하고, 투자보호조치(NT, MFN, NL)를 포함하되, 시장 접근은 추후 회원국 동의 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분쟁해결 챕터도 위생검역과 전자상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역구제 챕터는 덤핑마진을 계산 시 제로잉(zeroing) 금지를 포함시켰다. 지식재산권(IPR) 챕터는 대체로 WTO의 TRIPs 이상으로 평가된다. 안보 목적의 예외 및 안보상 외국인투자 승인 절차도 인정하였다.

상설 RCEP 사무국 설치는 기존 FTA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일부 회원국은 사무국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RCEP은 6개 ASEAN 회원국과 3개 비ASEAN 회원국이 비준하면 60일 이후 발효되며, 5년 이내에 전 회원국이 비준을 마쳐야 한다. 추가 가입을 원하는 나라는 발효 후 18개월 뒤 협상 개시가 가능하나, 인도는 그 이전에도 가입 협상이 가능하고 여타 경제협력 사업에도 옹저버로서 참가할 수 있다.

<표 6> RCEP의 챕터별 주요 내용

상품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내 관세철폐/삭감 비율 평균 91.5%(CPTPP 100%)</li> <li>- 원산지 규정: 재료누적(diagonal cumulation), 단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자율원산지 증명 도입. 단,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전회원국 발효 후 5년 이내 적용.</li> <li>- 관세차별: 기존의 양자 FTA에서 상이한 관세율이 공존할 경우 적용 원칙 도입</li> </ul>
서비스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 이행요건(PR) 부과 금지</li> <li>- 포괄주의(NL)+ratchet: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li> <li>- 열거주의(PL)+ratchet: 나머지 8국. 단, 6~15년(CLM)내 NL로 전환</li> <li>- 금융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포함</li> <li>- 금융서비스: GATS, 신형 금융서비스, 금융정보의 국경간 이동 관련 규정 추가</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 NL(중국 최초), CLM은 현상동결, 나머지는 5년 후 ratchet 적용</li> <li>- NT, MFN(CLM 제외), 공정공평대우, PR(CLM 제외), 고위경영진이사회(SMBD) 요구 금지 등 WTO TRIMs의 보호수준 상회</li> <li>- 중국: WTO 약속(100개)에 R&amp;D, 컨설팅 등 22개 추가, 37개 수준 향상, 설립전 NT 최초 도입, PR 금지도 FTA 최초 도입(2020년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에 도입)</li> <li>- ISDS는 발효 2년 내에 회원국 전원 동의 시 논의(뉴질랜드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li> </ul>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무역 원활화, 위생검역, 기술장벽,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상거래, 경쟁, 자연인의 이동 등 KAFTA에 비해 진전된 규범 도입</li> <li>- 정부조달: 중앙정부만 대상, MA는 추후 회원국 동의시 논의, 주로 투명성 규제, 일반적인 투자보호조치(NT, MFN, NL) 포함</li> <li>- 전자상거래: CLM 5년 유예, 전자송신에 관세 미부과, TPP 3개 규정 중 데이터 현지화(컴퓨터 설비의 역내 설치) 요구 금지, 정보의 국경간 이동(data free flow) 방해금지(두 개는 중국 최초 적용, EU-일 FTA 미적용) 도입,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 미도입, 분쟁해결 챕터 미적용</li> <li>- 지식재산권(IPR): TPP보다 진전된 조항 포함</li> <li>- 전반적으로 CPTPP 대비 낮은 수준: 노동, 환경, 국유기업(보조금) 등 제외</li> <li>- 보조금: 대부분 WTO 규정 적용</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위원회 지원을 위한 상설 RCEP 사무국 및 부속기구 설치</li> <li>- 안보 목적 예외 및 안보상 투자 승인여부 검토 인정, 양 조항은 분쟁해결 예외 대상</li> <li>- 비준: 6개ASEAN 회원국+3개 비ASEAN 회원국 사무국에 비준 통보 시 60일후 발효</li> <li>- 5년 내 전회원국 비준 완료. 5년마다 개정 가능</li> <li>- 가입: 발효 18개월후 가능. 단, 인도는 예외고, 옹저버 및 경제협력사업 참여 가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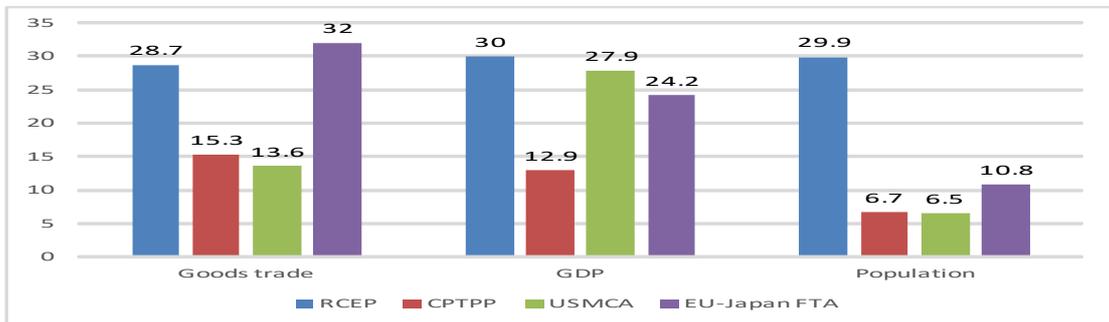
출처: 김양희, 20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요인”, 『정책연구시리즈』, 외교안보연구소

## 2. RCEP의 지경학

### 가. RCEP의 지경학적 기회요인 및 위험요인

RCEP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에서 형성된 세계 최대 메가 FTA다. 2015~2019년 RCEP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2%를 기록, CPTPP(2.2%), EU(2.3%), USMCA(2.4%)에 비해 단연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RCEP은 세계 GDP와 인구 각각의 30%를 점한다. 이는 세계 GDP의 24%, RCEP GDP의 82%를 점하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무역에 점하는 비중도 28.7%다(<그림 2> 참조).

<그림 2> 메가 FTA가 세계경제에 점하는 비중(%)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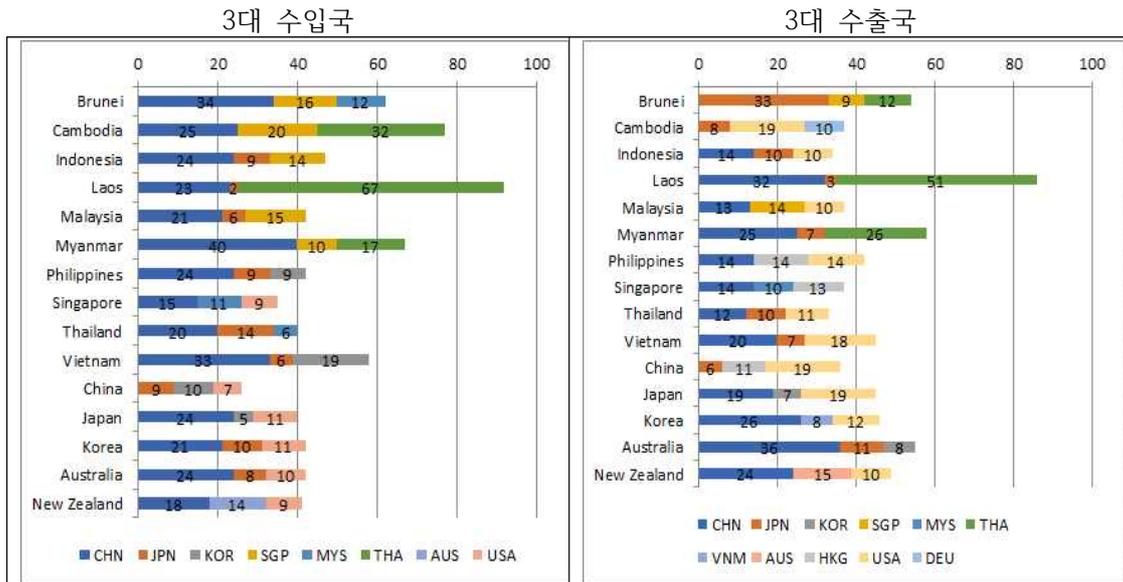
RCEP은 지경학적 측면에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모두를 안고 있다. 지경학적 기회요인은 RCEP-RVC의 두 가지 특징에 있다. 첫째, 중국의 압도적인 존재감이다. 지난 20년간 RCEP15의 연평균 대역내국 수출 증가율은 8.0%로, 대세계 수출 증가율(7.4%)을 능가하는데 이를 견인한 것이 중국이다. 중국의 주도성은 역내 양자무역구조에서도 확인된다. 역내 양자무역의 상위 10위는 ‘중국→일본(6.52%)’, ‘한국→중국(6.20%)’, ‘일본→중국(6.13%)’, ‘중국→한국(5.05%)’ 순으로 한중일 삼국간 무역이며, 이를 포함해 9위까지가 모두 중국과의 교역인 전형적인 허브-스포크 형태를 보인다.

<그림 3>에서 2018년 기준 수입과 수출별로 RCEP 회원국의 3대 수출국 및 수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14개 회원국 중 12개국에서 15%~40%(평균 25%)를 점하는 제1 수입국이다. RCEP 총수입의 2위 수입국의 위상을 지닌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한다. 중국의 경우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역내국 입장에서 중국의 최대 수입국으로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곧 과도한 대중 의존성을 뜻하는 바 지경학적 위험요인이 된다. <표 >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내국간의 높은 상호의존성이다.

RCEP-RVC의 두 번째 특징은 GVC와의 연계성이다. <그림 3>에서 역내 주요국인 일본, 한국, 호주의 제2 수입국이자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의 제3위 수입국이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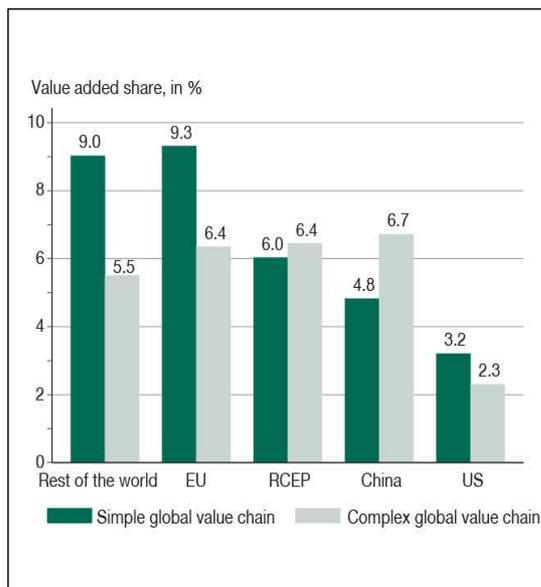
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중국이 8개 회원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나 최대 수입국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정작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다. 2위 수출국이 역외국인 경우는 8개국(홍콩 포함), 3위 수출국이 역외국인 경우는 3개국이 된다.

<그림 3> RCEP 회원국의 3대 수입국 및 수출국(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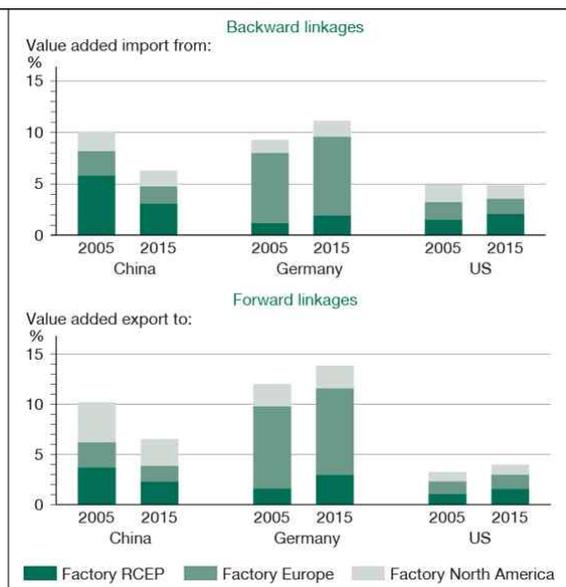


출처: Lisandra Flach, Hannah Hildenbrand, Feodora Teti,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Its Expected Effects on World Trade", *Intereconomics* vol. 56, 2021, Number 2, pp 92-98를 토대로 작성

<그림 4> 주요 국·지역의 유형별 GVC



<그림 5> 주요국 GVC상 상호의존성



출처: Lisandra Flach, Hannah Hildenbrand, Feodora Teti,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Its Expected Effects on World Trade", *Intereconomics* vol. 56, 2021, Number 2, pp 92-98

<그림 4>에서 부가가치 기준 RCEP의 GVC 무역 실태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단순 GVC(simple GVC)보다 복잡한 GVC(complex GVC) 비중이 높고 특히 중국의 경우 그렇다. RCEP의 상품시장의 보수적인 개방수준을 감안할 때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복잡한 GVC의 경우 ROO 단순화는 무역비용을 절감시켜 역내 무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주요 GVC 무역 상대는 누구일까? <그림 5>는 2005~2015년간 세계 3대 RVC의 허브를 이루는 중국, 독일, 미국 각각의 GVC의 후방참여와 전방참여 지역을 보여준다. 동 기간 중국의 후방참여와 전방참여에서 모두 RCEP 비중이 낮아지고 아울러 북미와의 연계도 낮아져 중국의 GVC 참여율 자체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과 미국에서 RCEP 비중은 높아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를 통해서도 RCEP이 GVC에서 타 지역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RCEP의 중핵을 이루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GVC에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표 7>에서 2015년 기준 국별 GVC 전방참여 실태를 보면 미국은 중국과 한국 각각의 전방참여국 2위와 3위(미 수출용 대 멕시코 중간재 수출 포함)를 점하는 중요한 중간재 수출시장이다. 미국 또한 전방참여국 3위가 중국이다. 한중일 삼국의 후방참여국 2위는 공히 미국으로, 핵심 중간재의 대미 수입 의존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미국의 후방참여국 1위는 USMCA 회원국을 제치고 중국이 차지해, 중간재의 강력한 대중 의존성이 보인다. RCEP와 GVC의 연계성은 곧 RCEP의 낮은 '자기 완결성'으로 표출된다. RCEP의 GDP대비 역내수출 비중(8.4%)은 EU(21.6%)보다 낮다.

<표 7>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GVC 참여 실태(2015년)

총 GVC 참여 (A+B, %)		중국		일본		한국		미국	
		34.9		37.6		51.7		31.7	
전방 참여(A)		17.5		24.4		19.1		22.2	
주요 수출국 순위	1	한국	11.0	중국	19.9	중국	37.1	멕시코	11.9
	2	미국	9.2	한국	10.1	베트남	6.6	캐나다	10.1
	3	멕시코	7.7	싱가포르	7.5	멕시코	5.0	중국	9.5
후방 참여(B)		17.3		13.2		32.6		9.5	
주요 수입국 순위	1	한국	11.4	중국	19.0	중국	21.3	중국	18.5
	2	미국	11.2	미국	11.7	미국	10.5	캐나다	15.6
	3	일본	9.3	호주	6.4	일본	9.0	멕시코	7.3

출처: 김양희, 20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협요인", 『정책연구시리즈』, 외교안보연구소

- 주: 1) GVC 중 '전방 참여'란 중간재의 총수출(total gross exports) 중 국내 부가가치 투입 비중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요 수출국 순위'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순위를 의미  
 2) GVC 중 '후방 참여'란 중간재의 총수출 중 수입을 통한 해외 부가가치 투입 비중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요 수입국 순위'란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순위를 의미

#### 나. RCEP의 경제적 기대효과

Patri and Plummer(2020)는 CGE 모형을 원용해 RCEP 체결로 2030년 RCEP의 실질GDP는 0.4% 증대하는데 최대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한중일 삼국

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관세 국가인 중국 및 한국과 최초로 FTA를 맺기 때문에 RCEP의 총수출 증가를 능가하는 이득을 삼국 간 수출에서 얻는다. 한편 이들에 따르면 RCEP의 세계 GDP 증대 효과는 CPPTPP를 능가하며, 더욱이 중국에는 미중 무역분쟁의 악영향을 상쇄시키는 완충지대가 될 전망이다.

<표 8> RCEP15의 경제적 기대 효과(2030년)

(단위: 10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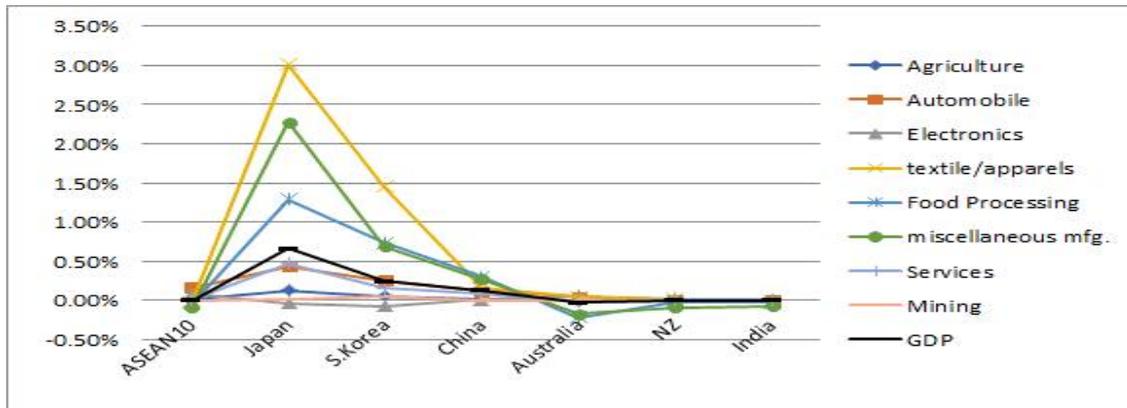
	2030년 실질소득	2030년 실질소득 증가 및 증가율							
		미중 무역 분쟁		CPTPP		RCEP15		RCEP16	
중국	27,839			-10	0.0	85	0.3	8	0.0
		-304	-1.1	-28	-0.1	100	0.4	9	0.0
일본	4,924			46	0.9	48	1.0	-9	-0.2
		5	0.1	47	0.9	46	0.9	-9	-0.2
한국	2,243	5	0.2	-3	-0.1	23	1.0	-2	-0.1
브루나이	31	0	-1.1	1	2.6	0	0.5	0	-0.1
인도네시아	2,192	2	0.1	-1	-0.1	3	0.1	-2	-0.1
말레이시아	675	3	0.4	21	3.1	4	0.6	-1	-0.2
필리핀	680	2	0.3	0	0.0	2	0.3	-1	-0.1
싱가포르	485	-3	-0.6	13	2.7	0	0.0	1	0.1
태국	812			-5	-0.6	4	0.5	-1	-0.1
		4	0.5	-4	-0.5	4	0.5	-1	-0.1
베트남	497	3	0.7	11	2.2	3	0.5	-1	-0.3
CLM	283	1	0.2	0	0.0	1	0.3	0	-0.1
호주	2,590	-1	0.0	12	0.5	1	0.0	3	0.1
뉴질랜드	264	0	0.1	3	1.1	1	0.2	0	0.1
RCEP15	43,516			87	0.2	174	0.4	-6	0.0
		-284	-0.7	70	0.2	187	0.4	-5	0.0
인도	5,487			-4	-0.1	-6	-0.1	60	1.1
		10	0.2	-3	-0.1	-6	-0.1	60	1.1
미국	25,754			-2	0.0	1	0.0	0	0.0
		-23	-0.1	-12	0.0	10	0.0	0	0.0
세계	133,801			147	0.0	186	0.1	53	0.0
		-301	-0.2	121	0.1	209	0.2	53	0.0

주: 유색으로 표시한 것이 미중 무역분쟁이 각 FTA의 실질소득 효과도 변화시키는 경우를 의미함.  
출처: Peter Petri and Michael Plummer(2020a)를 토대로 작성

IDE-GSM을 이용해 RCEP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熊谷聡·早川和伸(2021)는 2019년 기준에 비해 2030년에 각 회원국의 GDP 추가 상승분은 일본이 0.66%로 가장 높고 한국(0.24%), 중국(0.13%)이 뒤를 이어 CGE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Patri and Plummer(2020a)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그림 6> 참조). 일본은 특히 섬유·의류와 기타 제조업, 식품 가공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한편 CGE 모형의 여러 한계를 지적하며 SMART simulation 방법론을 원용해 RCEP이 각 회원국의 상품무역수지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시산한 Banga, Gallagher and Sharma(2021)도 일본이 가장 큰 경제적 수혜를 입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민감품목과 TRQ도 감안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일본만이 두드러지게 이익을 얻는 반면 한국이나 중국은 오히려 무역적자를 기록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면 Xiaonun Li(2021)은 무역액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수출뿐 아니라 수입이 많은 경우라도 GVC 무역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을 경우 RCEP의 기대효과는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6> RCEP15의 경제적 효과(2018년 기준 2030년의 증분)



출처: 熊谷 聡・早川 和伸, “地域的な包括的經濟連携 (RCEP) 協定の經濟効果-IDE-GSMによる分析” IDE-JETRO, 『アジア研ポリシー・ブリーフ』 No. 143 2021. 3. 26

인도 참여 시 RCEP의 기대효과는 대체로 불참 시에 비해 이득을 얻는 것으로 드러난다. Petri and Plummer(2020)는 RCEP16 체결시 인도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에서 최대 이익 확보하나 RCEP15는 싱가포르와 호주만 미증할 뿐 RCEP15보다 감소한다고 추산한다. 그 이유로 이들은 인도와 나머지 나라들이 상호 경공업 및 첨단 제조업에서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柳田健介(2020)는 RCEP16 체결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증가하며 熊谷 聡・早川 和伸(2021), Ken Itakura and Hiro Lee(2019), Kawasaki(2017), 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내놓는다.

### 3.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 회원국별 RCEP 전략 -

RCEP의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위험요인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요인도 엄존한다. 이는 회원국간 격차 및 차이, 전략적 경쟁자간의 경제통합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이것이 각 회원국의 RCEP 추진전략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가. 한국

RCEP은 한국이 최초로 맺는 메가 FTA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로 세계 무역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 교역 상대가 모여 있는 성장 가능성 높은 역내 시장이 FTA로 통합되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RCEP은 한국에게 사실상 한일 FTA 체결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5위(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한일 FTA 협상이 2004년 중단된 이후 한 번도 재개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 간 높은 산업 경합도로 인한 제조업의 반대 입장 때문이다. ADB(2020, pp.19~2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RCEP 회원국 간 수출 경합도(대체성)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0.658)에 대해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인도네시아(0.258)나 베트남(0.334)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기계 산업 등의 한일 FTA 반대 견해가 우세하다. 그로 인해 한국은 대일 시장 양허에서 이러한 민감 품목 개방을 대부분 유예하거나 장기철폐 일정에 묶어 두었다. 그러나 한일 FTA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일수입 단가를 낮춰, 대세계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계기 국내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이 RCEP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게 RCEP은 일중 FTA 체결도 의미한다. 이는 그간 한국이 중국에서 일본에 대해 누렸던 경쟁우위의 상실을 뜻한다. 따라서 기존에 한중일 FTA를 주저했던 중요한 요인 하나가 사라짐에 따라, 한중일 FTA 추진 전략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RCEP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대중 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더욱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RCEP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전략적 경쟁자는 아니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한국에 큰 과제다. ASEAN과의 관계 심화는 시장 다각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RCEP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도 중요하다. ASEAN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물론 반목도 있으나), 일본과의 차별화도 쉽지 않은 과제다.

#### 나. 중국

중국이 RVC의 명실상부한 허브로 부상한 상황에서, RCEP의 실무적인 협상 과정은 ASEAN이 주도했음에도 전략적 측면까지 포괄한다면 RCEP은 중국을 최대 수혜자로

만들었다. 중국은 미국이 TPP 탈퇴 뒤 일본 주도로 CPTPP가 발효되자 이를 견제하고자 RCEP 참가에 힘을 쏟았다. 중국은 마지막까지 상품양허와 지재권 규범 협상에 서 고전했으나 최종적으로 전자에서 양보하는 반대급부로 국유기업, 지재권, 환경, 노동, 디지털 무역 등 자국에게 불리한 규범을 거의 제외해 양허이익의 균형을 이뤘다.

이로써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일본 시장을 비롯해 완충지역에의 접근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RCEP은 중국 최초의 메가 FTA다. 이에 힘입어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CPTPP 참가 의지를 공식화하였고 한중일 FTA 추진에도 속도를 낼 기세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상품양허에서 중국의 양보는 국제사회의 고립 탈피 및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으며 역내에서 미국의 공백기에 미 대선으로 미일 협의도 어려운 시기에 중국의 역내 영향권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리커창(Li Keqiang) 총리는 서명식에서 RCEP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칭송하며 더욱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과 희망(a ray of light and hope amid the clouds)”라며 보호주의에 혈안이 된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하였다. RCEP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수호자뿐 아니라 역내 저개발국의 수호자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중국 정부와 산하기관 학자들은 RCEP이 CPTPP와 달리 포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Weixin, 2020). 중국은 일찍부터 RCEP이 역내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일본 및 ASEAN과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Melissa Cyrill, 2018). 이 점에서 중국은 RCEP의 빠른 타결을 위해 인도의 탈퇴를 묵인 혹은 방조했다고도 할 수 있다.

## 다. 일본

2장에서 확인했듯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수혜자는 단연 일본이다. 일본은 미중 갈등의 완충지대가 필요했으며, 특히 RCEP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한국과 중국 시장에의 접근성이 증대된다. 일본은 RCEP을 통해 세계 5대 메가 FTA(한중일 FTA, RCEP, CPTPP, TTIP, 일-EU FTA) 중 참가 가능한 메가 FTA에 모두 참여해 메가 FTA 네트워크의 허브로 부상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상품무역협정(TAG)에 이어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협정(DTA)도 맺어 이를 일영 FTA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FTA 체결국과의 무역비중은 총무역의 75%를 점한다. 한편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임에도 5대 민감 품목(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당제품)을 모두 양허에서 제외하는 실리를 챙겼다.

일본이 RCEP 서명에 이르기까지는 복잡한 심경이 교차한 듯하다. 일본은 미국이 TPP 탈퇴 뒤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안길 RCEP 체결에 주저하였으나 인도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RCEP 협상 지연 상황은 그러한 일본의 속내를 숨기기에 좋은 방패막이었다. 그러나 인도의 RCEP 이탈 후 지연시킬 명분이 사라졌고, 중국이 막판에 타결

을 서두르자 RCEP 내 중국의 입지 강화 저지 필요성을 느껴 체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일본은 RCEP을 복합적인 ‘아시아 전략 시프트’의 결실로 간주한다. ‘ASEAN+1’보다 높고 WTO+인 전자상거래, 투자 등의 규범 도입, 한중일 FTA 체결(특히 자동차부품), 유연한 통일원산지규정 도입 등으로 역내 SC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중요한 중국과 ASEAN이 RCEP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하며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RCEP 체결에는 미국의 CPTPP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숨겨있다(木内登英, 2020). 실제 일본이 RCEP 가입의사를 표하자 미국이 그 전까지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꿔 일본의 TPP 참가로 돌아선 경험을 밝히고 있다. 일부 일본학자는 향후 중국이 RCEP 규범을 준수하도록 RCEP 사무국을 활용해 견제와 감시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木内登英, 2020). RCEP을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및 Quad 구상과 연계하려는 시각도 존재한다(柳田健介, 2020). 따라서 인도의 조속한 복귀에 관심이 높다.

#### 라. ASEAN

ASEAN은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와중에 기존의 ASEAN+1 FTA를 통합한 RCEP 체결로 단일 ROO가 도입되어 스파게티볼 효과가 완화되고, ASEAN 회원국 간 연대(Arianto A Patunru and Ira Aprilianti, 2020)뿐 아니라 한중일 세 나라와의 연계 심화에도 기대를 건다(Tony Cripps, 2020). 미중 분쟁 하 한중일 기업의 탈중국 자본은 역내에서 ASEAN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2019년간 ASEAN 역내 직접투자 유입국 중 일본, 중국, 한국은 각각 1, 3, 4위를 점한다. 하지만 RCEP의 양허율은 ASEAN+1 FTA에 비해 낮고 이미 ASEAN 역내무역의존도가 높아 RCEP이 추가적으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를 크게 촉진할지 의문이다. ASEAN 회원국은 RCEP이 취약한 국내 제도, 정부 규제, 부실한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해 자국의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크다.

ASEAN이 RCEP에 적극성을 띤 이면에는 10개 회원국 중 일부만 CPTPP에 가입하면서 회원국간 분열을 우려했던 점도 있다. RCEP에는 전 회원국이 가입하므로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은 RCEP 협상 시 5개의 ASEAN+1 FTA의 허브로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ASEAN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를 주도한 ASEAN의 맹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다. 이 점에서 RCEP을 중국이 주도했다는 통념에 ASEAN은 동의하지 않는다(Arianto A Patunru and Ira Aprilianti, Dec. 3, 2020). Petri and Plummer(2020b)도 RCEP이 중국 주도의 FTA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ASEAN의 ‘중견국 외교’의 승리라고 단언한다. RCEP을 처음 제안한 것은 인도네시아이며 시종 협상을 주도했다. 실제 행정적으로도 ASEAN 사무국이 주도

권을 발휘해 왔다.

ASEAN은 역내국간 발전 격차를 고려해 처음부터 'RCEP 협상원칙(RCEP Negotiation Principles)'으로 점진적 자유화와 합의 중시를 제시해 관철시켰다. 지역 맹주가 아닌 중소국의 연합체인 ASEAN이 지역통합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지역통합의 어려운 현실을 투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RCEP이 ASEAN보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Economist, 2020).

#### 마. 호주·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수출입 모두 RCEP 역내의존도가 역외의존도보다 높다. 호주의 경우 RCEP은 양자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58%, 수출의 67%를 점하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교역 상대 상위 15위에 RCEP 회원국이 9개국 포함된다(Australian Government, 2020). 호주는 중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smart engagement with Asia'라는 슬로건 하에 WTO의 기능 저하와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인 동아시아와의 경제통합으로 고립을 해소하고 동 지역이 규칙에 기반한 무역협정 체결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를 부여한다.

뉴질랜드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인 RCEP이 자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계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RCEP은 뉴질랜드의 총 수출의 56%, 상품 수출의 61%, 서비스 수출의 45%, 외국인직접투자의 61%를 점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뉴질랜드의 양자 간 무역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RCEP 회원국이다(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0).

호주와 뉴질랜드는 나머지 회원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로 낮은 수준의 상품 양허보다 자국이 경쟁우위를 지닌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단일한 지재권 보호 관련 규범 도입에 관심이 크다. 두 나라 모두 높은 수준의 CPTPP에도 가입한 상태이므로 RCEP과 CPTPP 간의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보완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2020년 4월, 호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코로나19의 발생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요청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호주-중국 간 갈등은 중국의 대호주 보복조치 시행 등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급기야 중국은 2021년 5월 호주의 전 략경제대화회의 무기한 보류를 발표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월 13일 중국의 압박에 직면한 호주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호주는 2021년 3월 18일 국회에 RCEP 비준안을 상정했다. 호주는 RCEP이 자국의 외교정책 상 중요한 목표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뉴질랜드는 자국의 강력한 반대로 ISDS 제외에 성공했다는 점을 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 전 회원국의 발효 후 이에 관한 논의는 2년 이내에 재개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원 합의해야 도입이 가능하므로 뉴질랜드가 반대하는 한 도입은 쉽지 않다(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pp.6~9).

바. 인도

인도의 RCEP 탈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재료가 된다. 인도는 상품무역 적자 중 대중 비중이 약 40%, 대RCEP 비중이 60% 이상을 점해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의 확대를 우려했다. 인도는 중국에 주로 1차산품을 수출하고 고급 전자제품이나 의약품 등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구조를 이루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유제품의 경쟁열위도 협상 이탈을 초래한 요인이다.

인도는 RCEP 협상 시 관세인하 기준년도로 다른 회원국이 2014년을 주장할 때 “made in India” 정책 일환으로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 2019년을 원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 정책에 힘입어 2022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5%로 향상하는 것이 인도의 목표다. 인도는 총수입의 90%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었으나 자국의 경쟁우위 분야인 서비스 시장 개방(특히 전문가 이동)에 여타국은 소극적이었다. 전자상거래 챗터에서도 인도는 ‘컴퓨터 관련 설비의 영역내 설치(data localization)’를 원했으나 좌절됐다(CSIS, 2019).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탈퇴를 부추겼다.

중국과의 갈등도 인도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인도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초대할 것에, 중국은 인도의 쿼드(Quad) 합류에 불만이 고조되었다. 양국의 국경분쟁도 갈등을 심화시켰다. 인도는 미국과의 FTA가 전무한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예견되는 RCEP 체결에 거부감이 든 것이다. 인도의 국내 정치 지형도 이탈에 한 몫 했다. 그간 ASEAN, 일본, 한국 등과의 FTA는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져 FTA 체결에 대한 국내의 반감이 커졌다. 점차 민족주의가 고조되어 집권 여당과 지지기반인 농업계 및 중소기업이 RCEP에 반발하였다. 이에 일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도 RCEP-RVC 내 배제를 우려하는 시각(Kripa Anand, Apr, 27 2021)이 있음에도 인도가 조만간 가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표 9> RCEP 회원국별 전략 및 이해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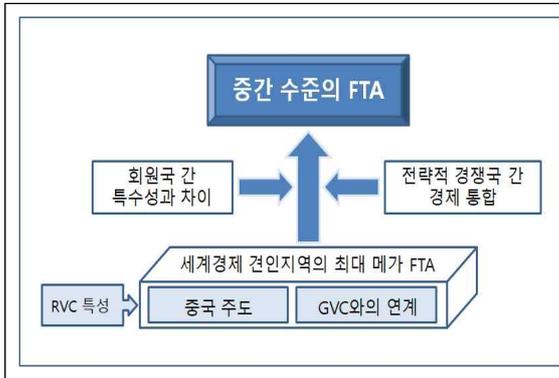
회원국	체결 배경 및 기대 효과
한국	최초의 메가 FTA 체결의 수혜자.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강화 기대. 장기적으로 한일 FTA의 부정적 영향 우려, 한중 관계 및 한일 관계 중요
중국	경제와 외교 양면에서 최대 수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자율적 전략 공간 확보 및 유리한 지위 선점, <u>비준 완료(4.15)</u>
일본	상대적 고관세의 중국, 한국과의 FTA로 경제적 수혜. 단, 일중 갈등이 잠재적 불안 요소, 인도 탈퇴로 대중 견제역 자임, 인도 가입 용이한 조항 도입 주도, <u>비준 완료(4.28)</u>
ASEAN	호혜적·포용적 RCEP 주도, 한중일의 FDI 유입 기대, ASEAN 중심성 강조된 RCEP을 중견국의 외교적 승리로 자평, 태국, 싱가포르 비준 완료
호주·뉴질랜드	서비스 시장 개방 기대.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호주는 쿼드에서 일본과 대중 공동견제 절감하면서도 <u>비준안 상정(3.18)</u>
인도	성장 잠재력 지대, RVC내 미약한 역할과 취약한 경쟁력, 국내의 반대 기류로 인해 탈퇴, 당분간 참여 의사 없으나 참여 시 협상 난항 예상

#### 4. RCEP의 발전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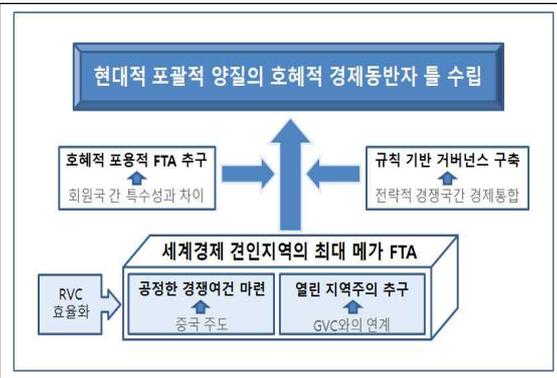
##### 가.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RCEP에는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위태롭게 공존한다. 지경학적 기회요인이란 세계경제의 생산 거점이자 성장 엔진 지역의 RVC 기반 FTA라는 점이나, 과도한 ‘중국 중심성’이라는 지경학적 위험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요인이란 ‘회원국 간 발전 격차와 정치체제 차이’, ‘전략적 경쟁국 간 경제통합’이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로 인한 타협점이 ‘중국주도 경제권’의 ‘아세안 주도 FTA’이고 중간 수준의 FTA라는 RCEP의 구조적 특징으로 발현되었다(<그림 7>).

<그림 7> RCEP의 현 주소



<그림 8> RCEP의 발전 방향



기술한 RCEP의 구조적 특징에 착목하자면 RCEP이 목표로 내건 ‘현대적·포괄적 양질의 호혜적 경제동반자 틀 수립’ 실현을 위한 과제는 지경학적 기회요인 최대화와 지정학적 위험요인 최소화로 응축된다(<그림 8>). 전자는 RVC의 중국 주도성 완화를 위한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 마련’과 RCEP의 GVC와의 연계성에 착안한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추구’로 모아진다. 후자는 회원국간 격차 완화를 위한 ‘호혜적·포용적 FTA(inclusive FTA) 추구’, 전략적 경쟁국 간 경제통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칙 기반 거버넌스(rule-based governance) 구축’이 핵심이다. 이상과 같은 RCEP의 과제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RCEP의 상품무역 분야 최대 성과는 통일 ROO이나, 중간 수준의 자유화에 느슨한 RVC(40%)로 인해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Made in RCEP’의 효율성 증진이 기대된다. Hayakawa et al.(2019)에 따르면 ROO 개정으로 기업의 조달비용이 반감되면 수입의 FTA 활용률은 중간값 기준 22%p 상승한다. 그러나 RCEP 효율성 제고가 ‘중국 주도성’ 강화로 이어져 RCEP의 지경학적 위험요인을 더 키울 수 있다. UCTAD(2020)는 RCEP의 FDI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나 Jean-Marc Blanchard and Wei Liang(2021)에 따르면 중국 소재 미국과 EU의 기업인 대상 설

문조사 결과는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에 더욱 FDI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혹은 RCEP-ROO의 누적 조항 적용으로 ‘made in China’ 기준이 모호해지는 ‘원산지 세탁’이 미국의 대중 고관세 부과 정책을 무력화될까 우려한다(Petri and Plummer, 2020b). 미국이 중국을 첨단 제품 GVC에서 분리시키려는 디커플링 전략은 RVC와 GVC의 연계성을 약화시켜 이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표 10> RCEP의 향후 과제

목표		핵심 과제
지경학적 기회요인 최대화	<b>공정한 경쟁여건 마련</b>	- 비시장경제의 경쟁여건 개선 위한 규범의 이행력 제고 및 고도화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RTA로의 진화 추구 - RCEP보다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체결로 고도화 촉진 ○ 전 분야의 이행력 제고 및 고도화 ○ 환경, 노동 등 도입 여건 마련
	<b>열린 지역주의 추구</b>	- 역외국과의 무역전환효과 최소화 ○ PSR의 RVC 40% 유지 ○ 교차누적 조항 도입 확산 - 한중일 FTA, EU·중국 CAI와 시너지 효과 추구
지정학적 위험요인 최소화	<b>포용적 FTA 추진</b>	- FTA 이행을 제고 위한 원산지증명 인프라 구축 지원 - 개도국 혁신역량 강화,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부패 해소 등 지원 - 일대일로(중국), 신남방정책(한국), 인태전략(일,호) 간 교집합 모색 - 코로나 와중 역내 불평등 및 빈곤 해소는 기본적인 인류애 구현에 더해 통합시장의 구매력 증대 차원에서도 긴급요 - 장차 북한을 RCEP 옵서버로 초청, RCEP ROO 역외가공지역으로 개성공단 지정
	<b>규칙기반 거버넌스 구축</b>	-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제정과 국제법적 구속력 담보 ○ ASEAN 사무국 역할을 지지하고 협력 ○ RCEP 사무국 역할 존중과 독립성 보장 ○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의 예방 조치 마련 ○ ‘mini WTO’ RCEP의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시장접근보다 규범이 점차 중시되는 오늘날 RCEP은 첨단 기술재의 공급망 안정화, 신통상 규범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RCEP 회원국 간에 과당경쟁이 노동, 환경, 인권 등을 희생양 삼는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치달아도 이를 제어할 규범이 미흡해 우려된다. 호주노총은 4월 13일, 군부 쿠데타 발발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가 포함된 RCEP 비준안을 상정한 자국 정부를 비난하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하였다(Australia Council of trade Unions, 2021). 이는 RCEP 회원국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라는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선명하게 투사한다. 그 대상이 미얀마가 아닌 중국일 경우 위험은 극대화된다.

‘전략적 경쟁자 간의 경제통합’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험요인은 RCEP의 험로를 예고한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출발한 유럽통합의 긴 여정에서 서독이 보여준 영민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이 전략적 경쟁자가 혼존하는 RCEP에는 보이지 않는다. RCEP 가입을 희망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여하는 전략적 경쟁자 간의 경

제통합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리트머스 실험지다. 하지만 RCEP 체결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1/15로 상대화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위험요인은 기회요인도 될 수 있다. 회원국 간 발전 격차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높은 성장욕구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회원국간 격차를 지닌 RCEP은 'mini WTO'로 불릴 만해 향후 WTO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축소 재현될 가능성과, WTO에서 수용성 높은 규범이 될 가능성이 공존한다.

RCEP은 2022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있다(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g 4 2021. "[RCEP unlikely to become effective until 2022](#)"). 현재 ASEAN 중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ASEAN 중 중국과 일본만 기준을 마쳤다. 한국은 10월 이내에 마칠 예정이다. ASEAN 중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CPTPP 기준도 마치지 않은 상황인데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RCEP에 대해 우호적임에도 국내 절차가 더디다. 호주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조속한 기준이 회의적이다. RCEP 최대 승자 중국이 기준을 서두른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그동안 주춤했던 일본이 세 번째로 기준을 마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은 기왕지사 RCEP을 CPTPP를 보완해 일본-ASEAN-중국을 잇는 RVC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중 갈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를 중국을 국제규범에 기반해 규율할 수 있는 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RCEP이 발효되면 메가 FTA 추진 시계도 빨라질 수 있다. 미국은 국내 현안 해소가 시급해 2023년 중간선거 이후에나 아태지역 통합에 관여할 전망이다. 단, 미국은 TPP에서 자국 관심사였던 22개 조항을 제외한 CPTPP 가입보다 USMCA 수준으로 이를 업그레이드한 TPP+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EU, 일본, 인도, 호주 등 유사국과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 반도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에 유리한 국제규범을 형성하며 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RCEP의 지경학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의 길항작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그 벡터 합을 예단하기 힘들다. 만일 전자가 우세하면 RCEP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시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나, 후자가 우세할 경우 8년간의 산고의 결실은 형해화될 수 있다. 선진국 위주의 백신민족주의와 각자도생이 난무하는 오늘날, RCEP이 호혜적·포용적 지역통합의 전범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전자에 더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금의 난제 극복에 RCEP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실사구시적 태도다.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는 그 길에 나섰다. 우리도 보다 능동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다.

# RCEP의 출범과 동아시아 무역구조의 변화: 여섯 가지 질문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RCEP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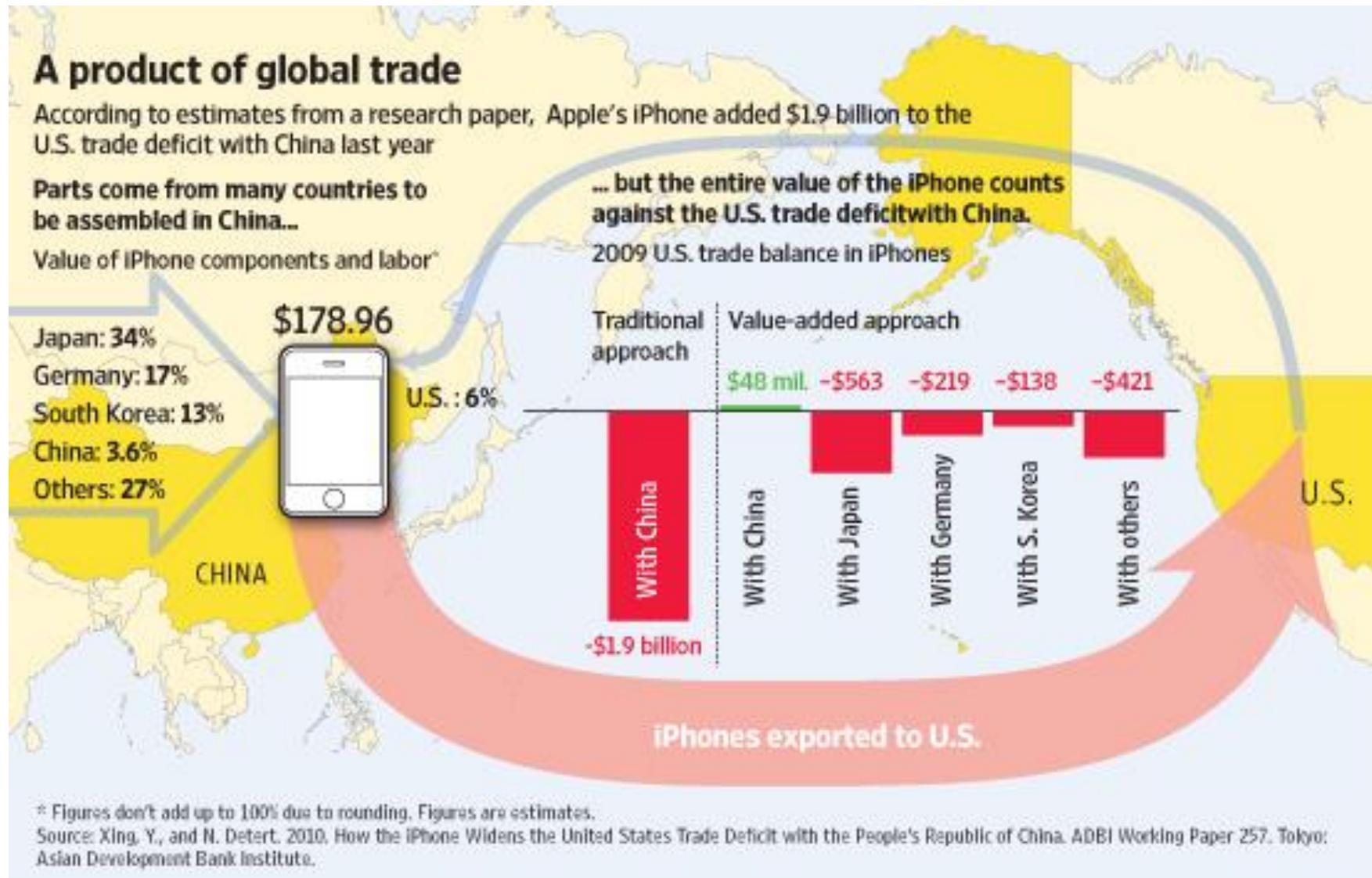
1. RCEP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각 국가들이 참여/불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3. RCEP은 기존 메가 FTA 협정과 무엇이 다른가?
4.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RCEP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RCEP은 mini-WTO가 될 수 있는가?
6. RCEP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 1. RCEP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배경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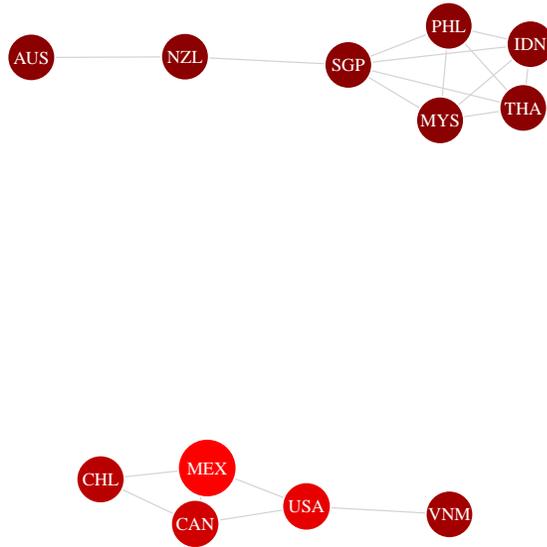
- 역내 교역이 증가하고 세계무역의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이 동아시아로 중심 이동
- 메가 FTA가 대륙별로 등장하면서 기존 양자, 소다자 중심의 FTA 를 포괄하는 세계적 추세
-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서비스,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투자 등 FTA가 다루는 정책영역(policy areas)이 확장되는 심화된 무역협정(Deep Trade Agreement)

# 가치사슬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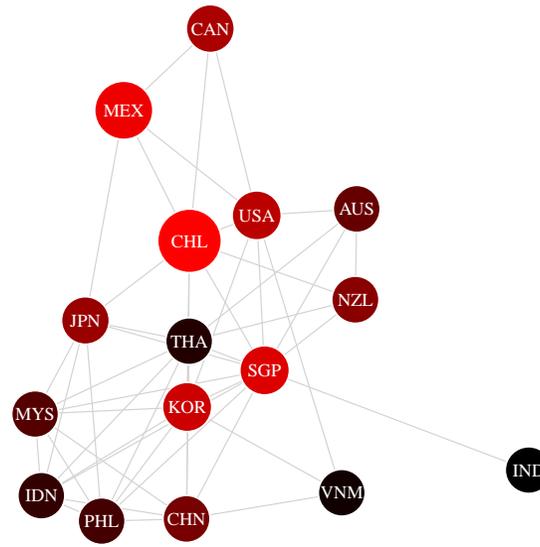
# 아시아에서 PTA의 확산

(A) Two Blocs i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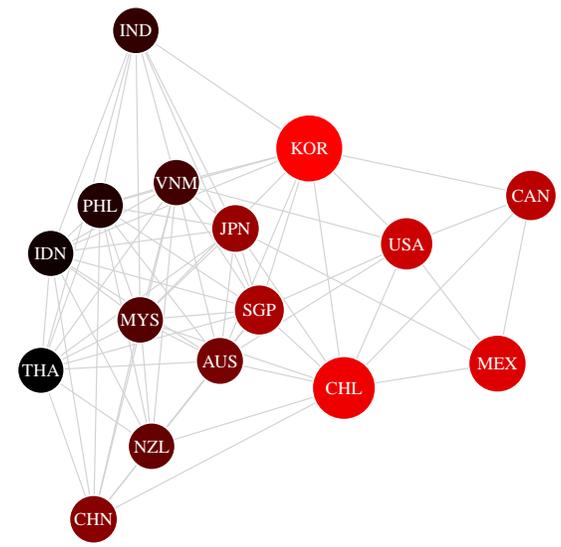
The Asia-Pacific region was divided by NAFTA and ASEAN.

(B) Rise of Chile in 2007



Chile (CHL) rose as an important hub of PTA network connecting both sides of the Pacific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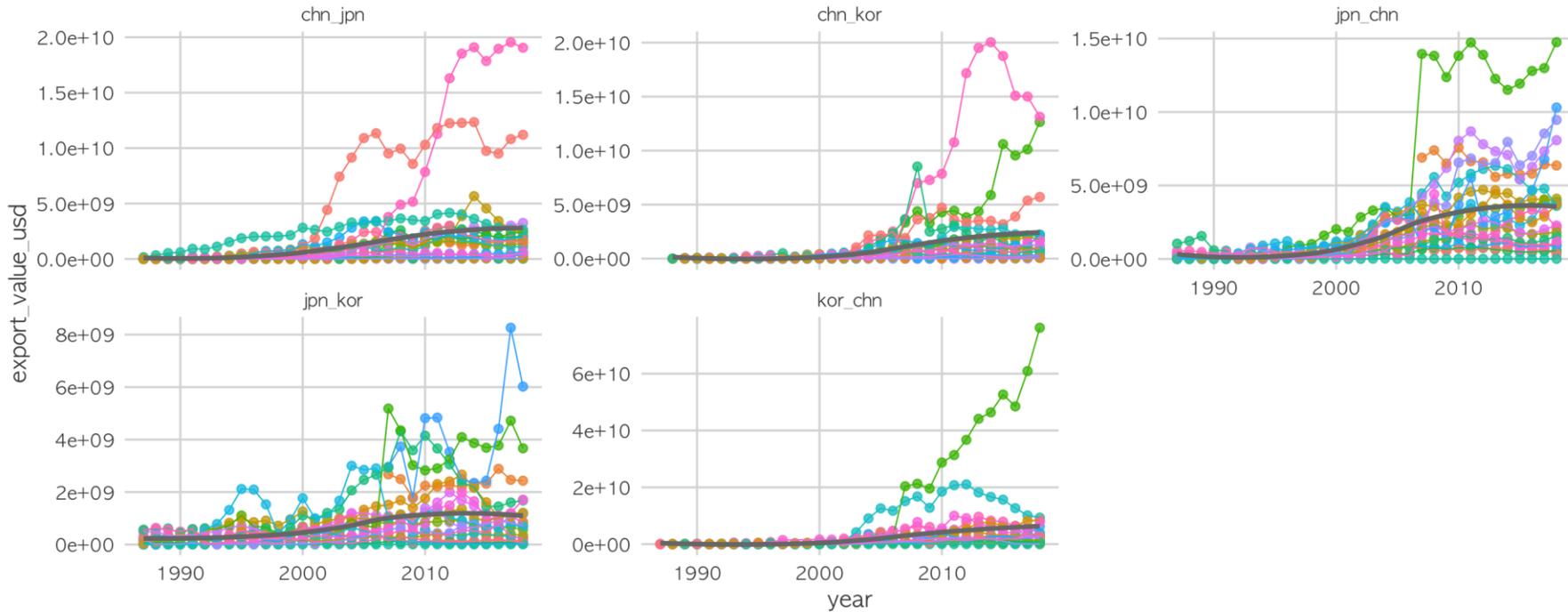
(C) Rise of South Korea in 2014



South Korea (KOR) became a new hub of the Asia-Pacific by forming new PTAs with the U.S., Canada, Australia, and the ASEAN countries.

# China-Japan-Korea Trilateral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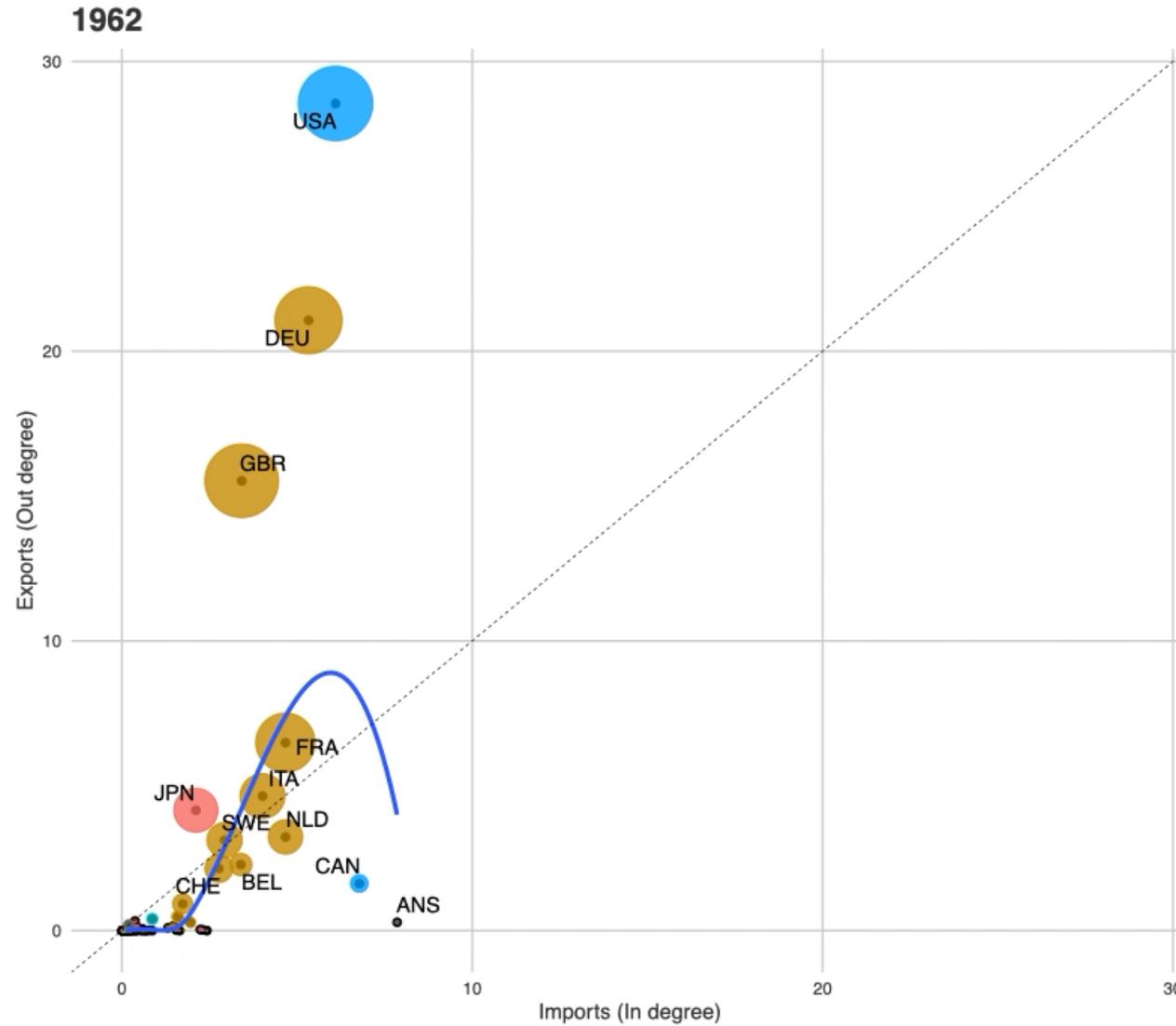
Top 20 traded products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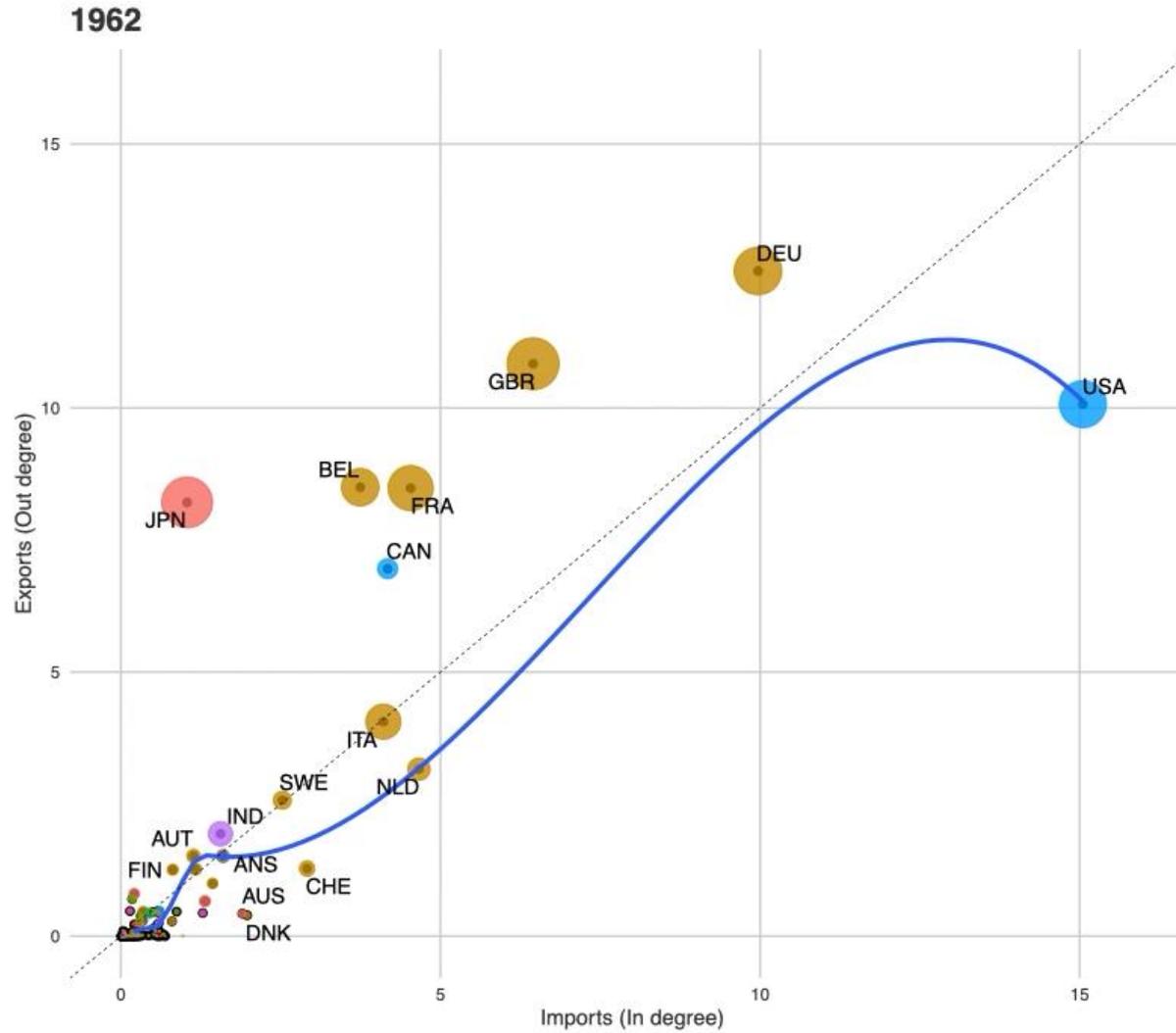
## 한중일 교역 의 증가

-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magnetic or optical readers, machines for transcribing data onto data media in coded form and machines for processing such data,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Commodities not specified according to kind
- Cyclic hydrocarbons
- Diodes, transistors,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assembled or not in modules, panels, light emitting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 Electric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e.g. rectifiers) and inductors
-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olts; connectors for 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or cables
-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 Insulated wire, cable and other electric conductors, connector fitted or not; optical fibre cables of individually sheathed fibres, whether or not assembled with electric conductors or fitted with connectors
- Iron or non-alloy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width of 600mm or more, hot-rolled, not clad, plated or coated
- 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Liquid crystal devices not constituting articles provided for more specifically in other headings; lasers, not laser diodes; other optical appliances and instruments n.e.c. in this chapter
-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e.c. in this chapter
- Machinery: parts and accessories (not covers, carrying cases and the like)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machines of heading no. 8469 to 8472
- Machines and apparatus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boules or wafers, semiconductor devic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or flat panel displays;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9-C to this Chapter
-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no.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 Motor vehicles; parts and accessories, of heading no. 8701 to 8705
- Optical fibres and optical fibre bundles; optical fibre cables not of heading no. 8544; sheets,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lenses, prisms, mirrors, of any material; unmounted; not non optical glass
- Petroleum oils and oils from bituminous minerals, not crude; preparations n.e.c. containing by weight 70%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ils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waste oils
-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wired/wireless networks), excluding items of 8443, 8525, 8527, or 8528
- Transmission apparatus;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pparatus of heading no. 8525 to 8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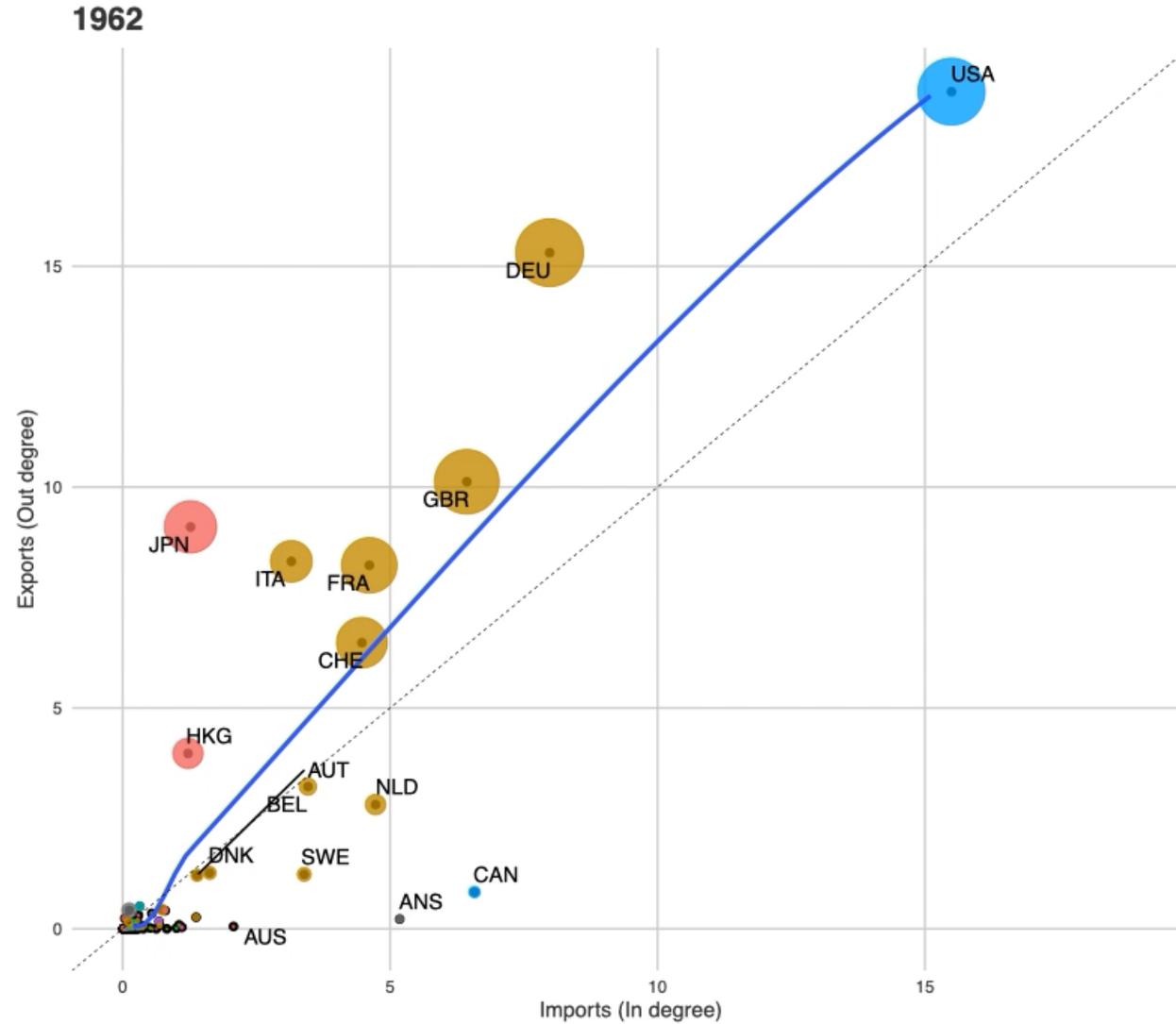
# Trade in Machinery and Vehicles



# Trade in Material Manufactur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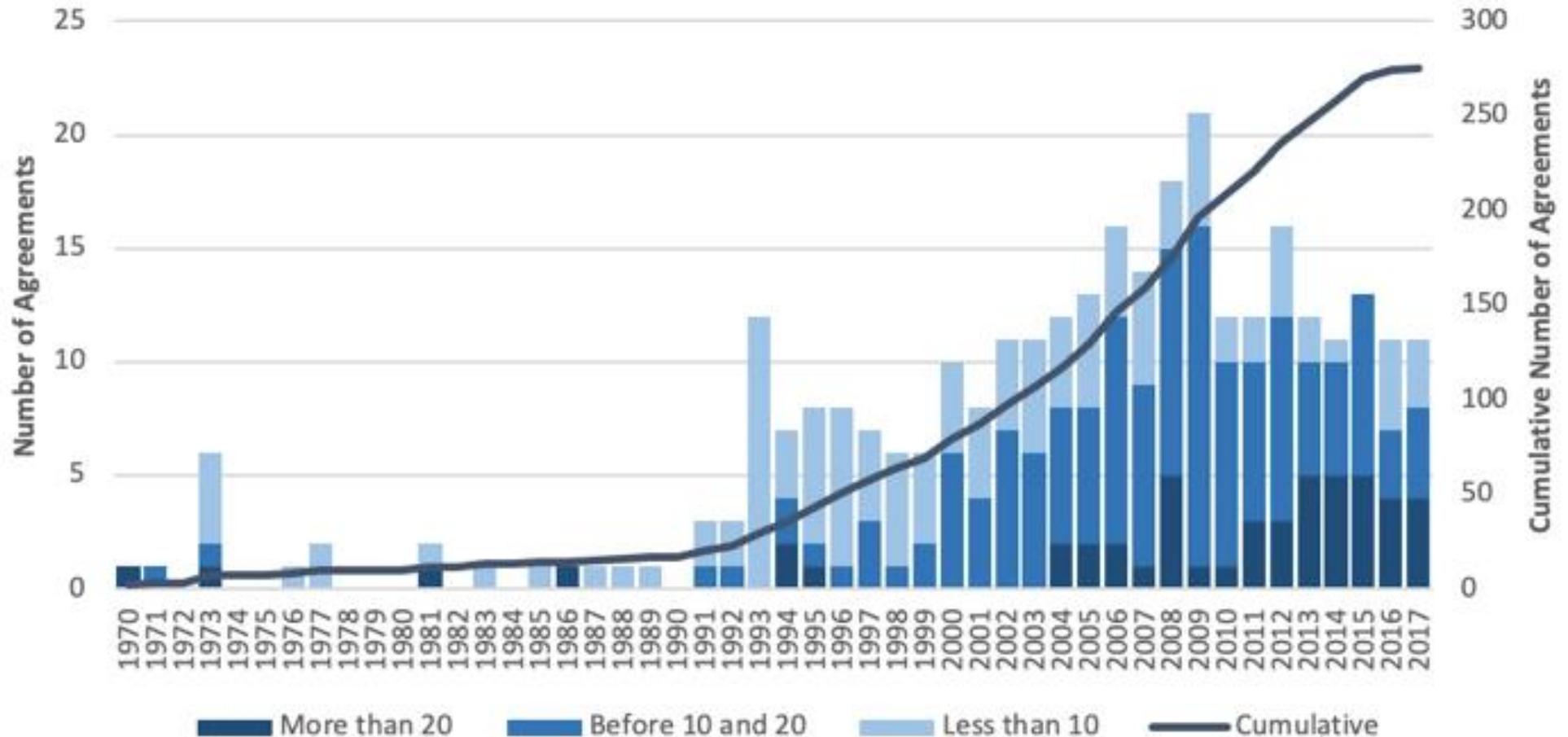


# Trade in Unspecified Manufacturers



# Deep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수(왼쪽, 누적)와 협정에 포함된 정책영역의 수(오른쪽)



Source: Hofmann et al. (2017).

# Deep Trade Agreement

정책영역의 종류



Source: Mattoo et al. (2020).

# 세 가지 가설

- 1. 기능주의:** 지금까지의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성과가 무역협정에 대한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한 이익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음
  1.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RCEP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왔는가?
  2. 왜 2019-20년에 협상이 급진전되었는가?
- 2. 현실주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로 아시아 무역질서는 미국부재의 불균형 상태에 놓임. 오랫동안 자국 중심의 무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중국이 불균형 상태를 활용하여 RCEP협상에 속도를 높임
  1. 아세안 중심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 왜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는가?
  3. 왜 바이든은 RCEP에 가입하지 않는가?
- 3. 자유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공통이익을 인식하고 국가들이 제도적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위험을 통제하고 경제적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1. 왜 TPP가 아닌 RCEP인가?
  2. 왜 2019-20년에 협상이 급진전되었는가?

# \*지역협력에 대한 핵심국가 관계이론

(A theory of inter-core relationship for regional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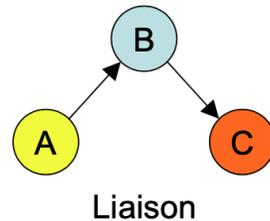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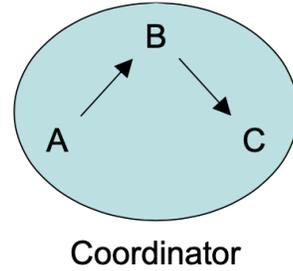
- 국제정치는 “지역”이라는 작은 **정치 공간**으로 나누어지며 그 지역에는 핵심국가와 주변부 국가(core-periphery)가 공존한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등
- 패권국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뛰어넘어 다른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즉, 패권국은 초지역적 영향력(예: 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을 가진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핵심국가**란 지역이라는 정치 공간에서 비토파워(veto power)를 가진 국가이다. 즉, 스스로의 힘만으로 현상태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positive power) 최소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태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힘(negative power)을 가지고 있다.
- 핵심국가는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20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삼으면,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등.
- 패권국과는 다르게 핵심국가는 **간주관적 승인**의 비중이 더 크다.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인 이유로 국력에 비해 핵심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

## \*지역협력에 대한 핵심국가 관계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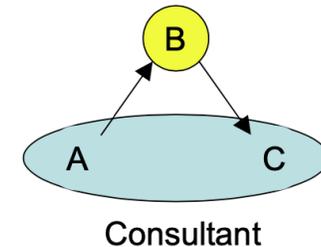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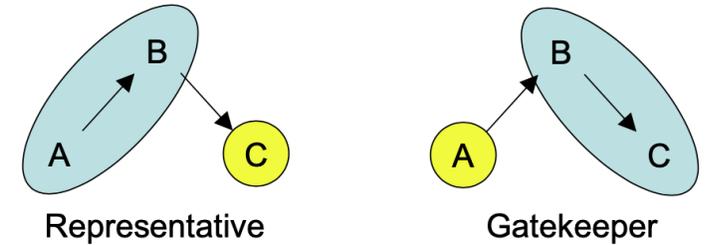
- 지역협력 가능성과 진행방향은 (1) 패권국의 지역에 대한 전략과 (2) 핵심국가들 간의 국가 간 관계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 예: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적 국가 간 관계 + NATO를 통한 집단안보 => 서유럽의 경제적 통합 => 유럽통합
- 예: 일본과 중국의 갈등적 국가 간 관계 (70년대 제외) + 미일동맹 => 미국 동맹국가 중심의 경제 협력 우선 => 아시아 지역협력 수준 낮음
- 핵심국가 관계이론의 가장 중요한 예측은 핵심국가의 관계가 지역협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
- 21세기 역내 핵심국가를 **중국, 일본, 한국**으로 가정해 보면,
- 핵심국가와 패권국과의 관계: 미중관계(-), 미일관계(+), 한미관계(+)
- 핵심국가 간 관계: 중일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 **한중일을 핵심국가로 보는 관점에서는 RCEP의 등장을 설명하기 어려움**

# ASEAN as a HONEST BROKER?

- 변수: 아세안이 “협상단계의 중재국가”(broker)로 등장
- 전통적 의미(국력)의 핵심국가는 아니지만 간주관적 관계에서 한중일의 승인을 받아서 협상단계의 중재역할을 인정받음
- 이미 CMIM에서 아세안이라는 행위자가 협력을 주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다음 장 그림)
- 아세안과 패권국가의 관계: +
- 아세안과 한중일의 관계: +



## Brokerage Roles



- We can count how often a node enacts each kind of brokerage role

Steve Borgatti (2005)

CMIM 투표권 배분방식  
(Capannelli and Tan 2012)

Members	Financial Contributions		Borrowing Arrangements		Voting Power			
	\$ billion	% share	Multiplier	Quota: Maximum Swap Amount (\$ billion)	No. of Basic Votes	No. of Votes Based on Contributions	Total No. of Votes	% share
PRC (includes Hong Kong, China)	76.800	32.000						28.410
PRC (excludes Hong Kong, China)	68.400	28.500	0.50	34.20	3.200	68.400	71.600	25.430
Hong Kong, China	8.400	3.500	2.50	6.30	0.000	8.400	8.400	2.980
Japan	76.800	32.000	0.50	38.40	3.200	76.800	80.000	28.410
Republic of Korea	38.400	16.000	1.00	38.40	3.200	38.400	41.600	14.770
<b>Plus Three Countries</b>	<b>192.000</b>	<b>80.000</b>			<b>9.600</b>	<b>192.000</b>	<b>201.600</b>	<b>71.590</b>
Brunei Darussalam	0.060	0.025	5.00	0.30	3.200	0.060	3.260	1.158
Cambodia	0.240	0.100	5.00	1.20	3.200	0.240	3.440	1.222
Indonesia	9.104	3.793	2.50	22.76	3.200	9.104	12.300	4.369
Lao PDR	0.060	0.025	5.00	0.30	3.200	0.060	3.260	1.158
Malaysia	9.104	3.793	2.50	22.76	3.200	9.104	12.300	4.369
Myanmar	0.120	0.050	5.00	0.60	3.200	0.120	3.320	1.179
Philippines	9.104	3.793	2.50	22.76	3.200	9.104	12.300	4.369
Singapore	9.104	3.793	2.50	22.76	3.200	9.104	12.300	4.369
Thailand	9.104	3.793	2.50	22.76	3.200	9.104	12.300	4.369
Viet Nam	2.000	0.833	5.00	10.00	3.200	2.000	5.200	1.847
<b>ASEAN</b>	<b>48.00</b>	<b>20.00</b>			<b>32.00</b>	<b>48.00</b>	<b>80.00</b>	<b>28.41</b>
<b>ASEAN+3</b>	<b>240.00</b>	<b>100.00</b>			<b>41.60</b>	<b>240.00</b>	<b>281.60</b>	<b>100.00</b>

# ASEAN as a HONEST BROKER?

- 협력으로 인한 공동이익이 크다는 것을 한중일 모두 인식
- 아세안이 개도국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한중일이 우려할 수 있는 급진적 자유화의 가능성이 약함
- 한중일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협상은 깨지기 쉬우나 아세안이 이득을 취하고 한중일은 비교적 공평하게 비용/편익을 나누어 가진다면 협상은 낮은 수준에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 높음
- 앞으로도 한중일 관계와 미중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아시아 협력의 장에서 아세안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대표적으로 RCEP사무국 설치장소는 한국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으나 (아세안의 반대와 중일의 견제 때문에) 아마도 아세안 국가 한 곳(인도네시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협상의 중재자는 협상타결까지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으나 협상의 비준과 집행, 관리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음
- CMIM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음

## 2. 각 국가들이 참여/불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중국: Dual circulation model로 발전전략을 수정했으나 현재 수준에서 대외교역과 투자를 배제한 자립경제는 기술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 External circulation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함.
- 일본: TPP의 미국탈퇴로 경제적 도약의 기회가 약화. 한국, 중국과의 FTA 미체결로 인한 불안감. 미국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국중심의 교역구조에서 한국이나 대만, 아세안 국가들에게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
- 한국: 일본을 제외하면 모든 RCEP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으나 불참시에 정치적 손실이 매우 큼 (TPP의 경험). 미국의 디커플링이 중대한 위협. 중국, 일본과의 양자관계에서 오는 정치적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다자적 틀이 필요

## 2. 각 국가들이 참여/불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세안: 역내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을 제도적 협력으로 묶어내고 경제적 도약, 특히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가치사슬에서 upstream producer group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한중일과의 심화된 교역구조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
- 인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원산지 규정의 완화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국내경제구조를 가짐. 선거패배를 야기할 수 있는 대외협정 체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중국과의 FTA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국내시장 잠식할 것이라는 China shock에 대한 우려가 큼. 한중일과의 개별협정을 선호

### 3. RCEP은 기존 메가 FTA 협정과 무엇이 다른가?

- 아시아 역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
- 동아시아 가치사슬을 하나로 묶는 자유무역협정 (심도는 깊지 않음)
- 미국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의 의미가 "아시아"로 전환
-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진행됨 (한중일의 불편한 동거)
- 중국이 교역구조의 중심에 오면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최초의 메가 FTA (중국의 승리?)

# 4.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RCEP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봉쇄전략으로 전환한다면 RCEP은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움
- 한중일의 심각한 갈등이 등장해도 성공이 어려움
- 미국이 공격적 자유무역협정 전략으로 전환하면 CPTPP와 경쟁하거나 하나로 흡수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현재 미국은 국내사정으로 인해 (최소한 2024년까지는) 공격적 자유무역협정 전략으로 전환하기 어려움
- 그동안 RCEP은 중국에게 중요한 지역적 breathing space를 제공할 수 있음
- 미국은 RCEP에 대항해서 CPTPP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한 소다자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 있음(예: digital trade accord)

# Digital Trade Must be Central to Biden's 'Pivot to Asia'

Washington's current approach to Southeast Asia underestimates China's increasing lead in digital trade and technology.



By [Linh Tong](#)  
August 10, 2021



GLOBAL TIMES =

COMMENTS / EXPERT ASSESSMENT

## US attempt to use 'small digital circle containment' set to fail

By [Global Times](#)  
Published: Jul 13, 2021 10:29 PM



This Week in Asia / Politics

## Defence, digital trade, Covid-19 in focus as Kamala Harris joins Biden administration's convoy to Southeast Asia

- Analysts say Harris' upcoming visits to Vietnam, Singapore will offer insights into how Washington plans to match Beijing's regional trade dominance
- It is one of several trips US officials have made to the region, following complaints that it seemed low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list of priorities



By [Bhavan Jaipragas](#) in Hong Kong and [Dewey Sim](#) in Singapore  
Published: 1:00pm, 21 Aug, 2021

Why you can trust SCMP



## 5. RCEP은 mini-WTO가 될 수 있는가?

- 한중일 모두 역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특히 미국시장에 대해 의존적
- 낮은 수준의 자유화와 원산지 규정의 통일은 결국 역외 시장에서의 우위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임
- 개도국 주도의 협정으로 농산물이나 정부조달, ISD등에서 예외 조항이 많음
- Mini-WTO가 되기 위해서는 DTA에 준하는 협정이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불충분한 자유화

# 6. RCEP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함
- 아세안 중심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아시아 메가 FTA 협정의 등장에 노력해야할 이유
- RCEP 협상과 비준에 적극적으로 참여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에 참여할 것인가?)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양자적 해결이 쉽지 않은 중국, 일본과의 정치적 리스크를 동아시아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메가아시아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전과 쟁점(2021.9.10)

# 토론문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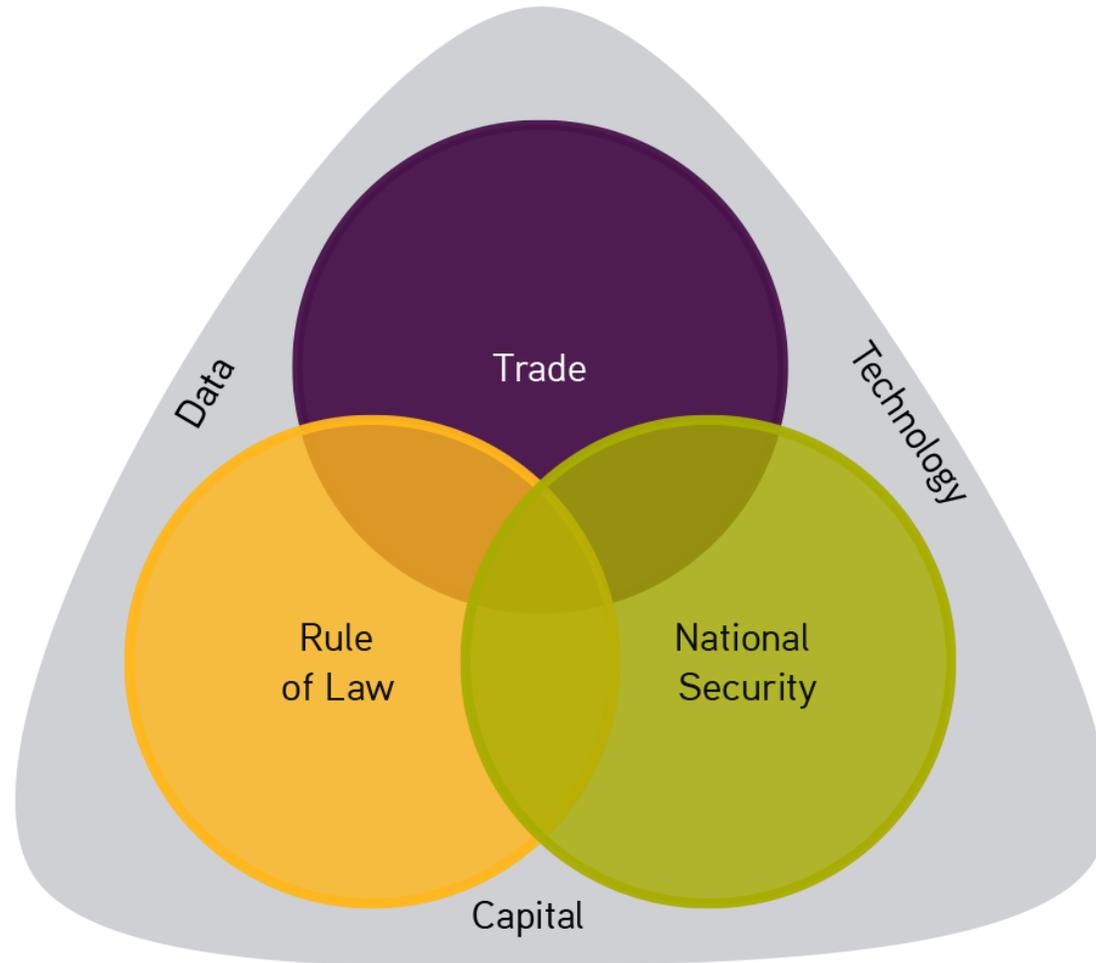
# 질문

- 보호주의 시대에 FTA가 체결할 때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 RECP은 상호의존의 무기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경제적 효과나 전략적 함의 모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RCEP보다 CPTPP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
-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 동아시아 지역 가치사슬/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 자유주의(FTA) 대 보호주의(제재)

-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자유무역 퇴조, 보호주의 발호
- 탈동조화와 신냉전이 자유무역 체제의 기반을 침식
- 보호주의가 FTA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
-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 무역, 법치, 국가안보의 관계 조정



# 상호의존의 무기화

		목표	
		국가/적대국	경제행위자
채널	양자	비대칭적 상호의존 (전통적 제재)	시장 권력 (시장접근 제한)
	네트워크	무기화된 상호의존 (요충지/팬옵티콘)	통제 포인트 (지불 시스템 제한)

# 미국의 대중 제재

분야	정책	담당 기관
무역	보복관세	USTR
	수출금지 (실체 목록)	상무부
	중국산 상품(통신장비) 구매 제한	국방부(FCC)
금융	상장철폐(중국 통신사)	국무부/증권거래소
	공적 연기금 중국기업에 투자 금지	국무부/재무부
	환율조작(반기 보고서)	재무부
투자	해외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	재무부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기업 유치(한국/대만)	상무부
	외국회사문책법	PCAOB
	미국혁신경쟁법	의회에서 논의중

# 중국의 대미 제재

분야	정책	담당 기관
무역	보복관세	상무부
	수출금지 제한기술 목록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	상무부
	반외국제제법	국무원, 외교부
	수출통제법	상무부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상무부
금융	중국 통신사 지분 50% 이상 취득을 금지	재무부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상무부, 발개위
투자	사이버보안심사방법	공업정보화부
	데이터안전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핵심정보인프라의 사이버보안법 심사	공업정보화부

# RCE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평가

- 미중 무역전쟁으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RCEP을 협상할 때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다분
- 회원국이 아닌 미국의 대중 제재는 이차제재(secondary sanction)을 통해 제3국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 쌍순환 전략을 통해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홍색공급망(紅色供給網)을 완성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RCEP의 효용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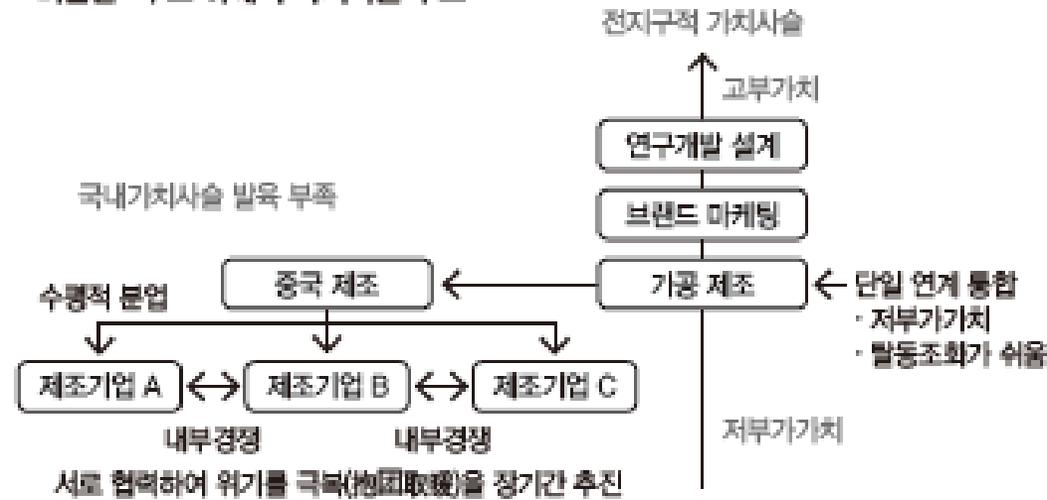
# 한국의 교역 (2019년)

(단위: b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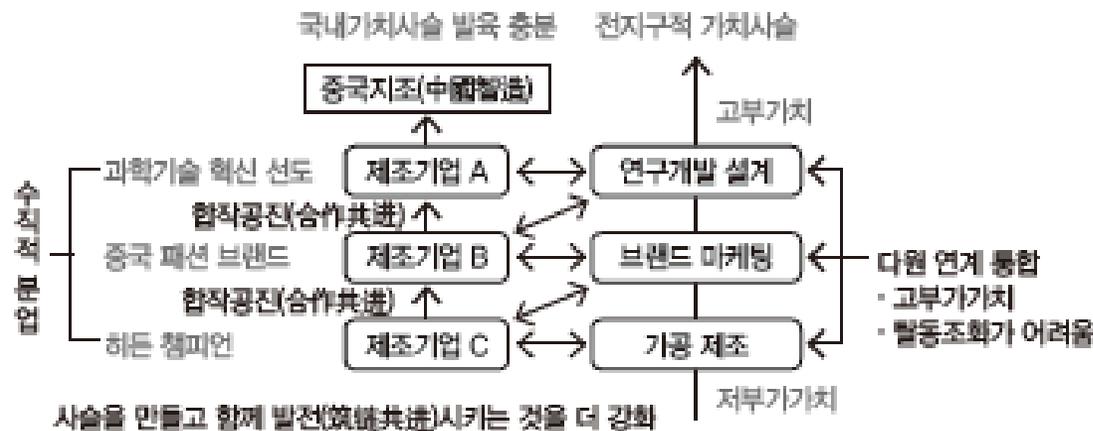
대상	GDP	수출	수입	전체 교역에서 비중(%)	FTA 여부
중국	14,341	136.2	107.2	23.3	2015년 비준
미국	21,433	73.6	62.1	13.0	2012년 비준
일본	5,149	28.4	47.6	7.3	
ASEAN	3,237	95.1	56.2	14.5	2007년 비준
RCEP	24,328	269.0	232.9	48.0	2020년 체결

# 중국의 쌍순환(双循环) 전략: 가치사슬

“외순환” 주도 하에서 가치사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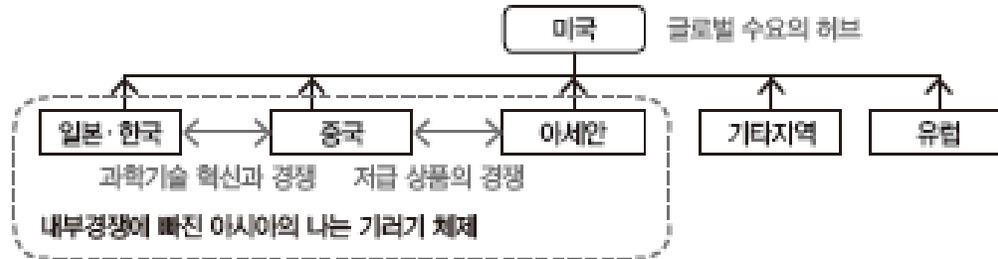


“쌍순환” 주도 하에서 가치사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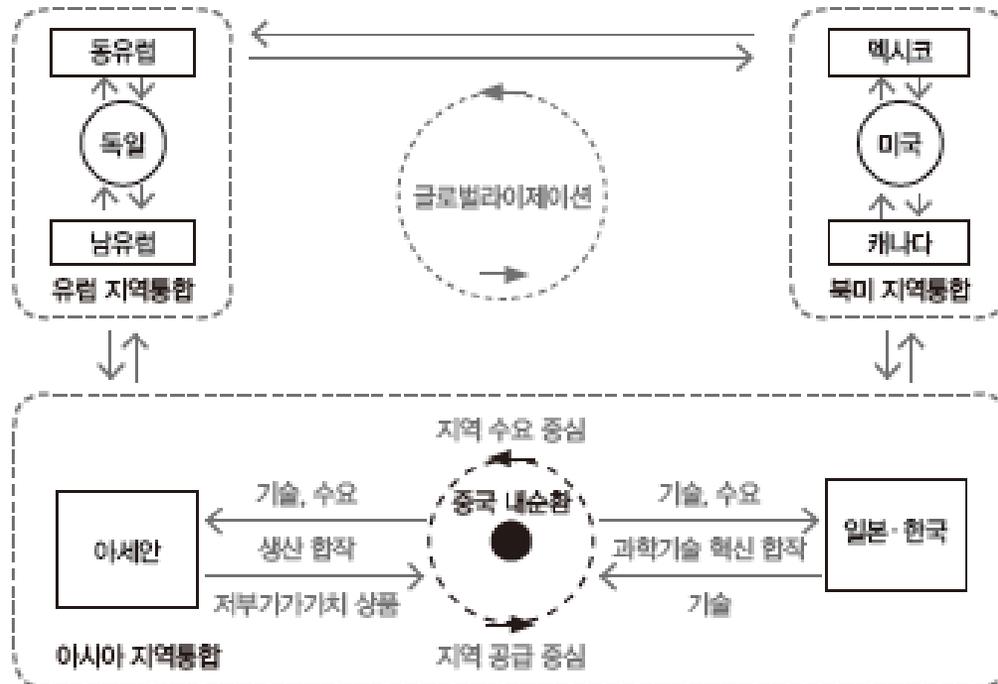


# 중국의 쌍순환(双循环) 전략

지구화의 지난 라운드 국면: "세계는 평평하다"



지구화의 새로운 국면: "다원적 구조"



# 중국 최종 수요에서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

최종수요 중 중국 비중(%)	국내 부가가치생산 비중	해외부가가치 기여 비중					
		1위		2위		3위	
전자	55.2	한국	9.2	대만	8.3	일본	5.1
운송장비	67.6	미국	12.9	프랑스	3.6	독일	2.5
제지	72.1	미국	5.2	캐나다	1.8	일본	1.7
자동차 제작	75.4	독일	4.1	일본	3.5	미국	3.5
기계장비	76.5	일본	3.5	미국	2.6	독일	2.4
화학 및 의약	78.4	미국	3.0	일본	1.7	독일	1.3
T운송	80.2	미국	3.2	일본	1.4	홍콩	1.0
가사용품	80.8	미국	2.3	일본	1.7	인도	1.3
금속	80.8	미국	2.1	호주	2.0	일본	1.5
에너지	81.1	사우디	2.0	러시아	1.5	미국	1.1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83.9	미국	2.4	인도	2.2	한국	1.3
소매	84.5	미국	3.3	일본	1.7	독일	1.0
섬유	85.9	미국	1.3	한국	1.0	일본	0.9
자원	87.5	미국	1.3	호주	0.9	사우디	0.8

# 특허출원 (전 세계 비중)

전 세계(비중)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자	미국	26.7	일본	19.7	중국	19.6	한국	7.0	독일	5.7
운송장비	미국	18.0	중국	11.9	일본	11.2	독일	11.2	프랑스	7.9
제지	미국	21.1	일본	18.4	독일	14.6	프랑스	5.2	핀란드	5.0
자동차 제조	일본	31.0	독일	23.2	미국	13.4	프랑스	7.1	중국	4.6
기계장비	일본	23.1	미국	19.5	독일	12.9	중국	10.8	한국	5.6
화학 및 의약	미국	29.1	일본	19.4	독일	9.8	중국	6.8	한국	5.1
가사용품	미국	33.5	일본	15.8	독일	7.2	중국	6.3	한국	5.3
금속	일본	23.0	미국	17.5	독일	13.9	중국	7.3	한국	5.9
에너지	미국	39.7	일본	7.2	독일	6.3	중국	4.9	프랑스	4.9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미국	40.2	일본	12.1	중국	11.2	한국	10.2	영국	2.9
섬유	미국	31.6	일본	16.0	한국	8.1	중국	7.3	독일	6.1
농식품	미국	22.0	일본	15.6	중국	10.8	한국	5.5	스위스	5.4
건설	미국	32.7	일본	13.6	독일	7.4	중국	6.3	한국	5.8

2021.9.10.

##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전망과 과제” 토론문

서정경(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1. 지경학과 지정학의 구분?

- 지정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경학도 지정학의 일부: 지정학적 목표를 위한 경제적 수단 동원

- GVCs 시대 경제와 안보의 긴밀한 연계성

\* 상호의존의 무기화

관세부와 중심의 무역전쟁은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게임,

지구적 가치사슬 내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상대국의 공급망의 교란 시도 가능.

네트워크의 비대칭성 활용 게임은 상대에 대한 타격(choke point)은 극대화하는 반면 자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안보정책과 마찬가지로 통상정책도 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일조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 경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7).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확대 / 미중 경쟁시기 “국가안보(國家安全)” 지위의 현저한 격상.

-> 자유주의 계열 연구와 이론들(ex. 복합적 상호의존론, 상업 평화론 등)의 한계

-> 현실주의·구성주의에 기반한 경제·안보 연계 연구(정치경제적 접근 + 대중 민족주의, 포퓰리즘, 국가주의 강화 등) 필요

### 2. 중국의 입장

-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한 인식의 점진적 변화

민족국가의 공고함 수호-> 강대국화(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유효한 수단 -> 국가(공산당) 존망 위기에의 필사적 대응

- 중국의 기회와 도전

■ 미국의 전면적 압박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맞이하여 지구적 가치사슬이 필연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측 : 아시아지역의 지구적 가치사슬이 당면한 최대의 도전은 미국의 ‘중국 제거(去中國化)’ 움직임. 중국학계의 두가지 목소리 (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중국이 글로벌 자본의 “도피처”가 될 것. (2) 중국이 지구적 가치 사슬에서 배제될 것. - GVC의 글로벌 제이션과 중국의 시장규모는 지속 확대, 특히 국내 순환을 위주로 하는 쌍순환 전략 실행 이후 중국을 최종 소비시장으로 하는 GVC가 형성될 것이다. 즉 미국과 서방을 최종 소비시장으로 하는, 그리고 중국을 최종 소비시장으로 하는 두 개의 지역 가치사슬 형성 가능성 주목(李向阳(中国社科院))

■ CPTPP의 부정적 영향 상쇄

CPTPP의 배타성(무역 관련 높은 표준화 정도를 요구하며 가입 문턱을 높여놓았음), CPTPP 참가국이 중국 수출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중국의 경제 손실(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CPTPP는 중국 GDP 0.04% 하락 초래.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대만이 참여할 경우 CPTPP는 중국의 GDP를 0.2% 하락시킬 것임)을 RCEP이 상쇄해 준다고 분석. RCEP 발효 이후 IT 등 부문에서 분명한 경제적 이익 예상, RCEP 참여국이 늘수록 전체적 이익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 (“覆盖15个国家、23亿人口、超25万亿美元GDP的RCEP 意味着什么?”金融界, 2020.11.17)

-> 지구적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

“RCEP时代中国机遇与挑战,” 中国宏观经济专题报告发布, 中国宏观经济论坛(CMF), 2021.3.11 (中国人民大学国家发展与战略研究院、经济学院、中诚信国际信用评级有限责任公司 공동주최. 百度APP、新浪财经、网易财经、凤凰网财经、搜狐财经、WIND 및 讯财经、中国网、南都直播 등 다양한 매체 플랫폼이 온라인 생중계. 동시 접속자 수 110만 육박).

■ RCEP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로운 이정표임.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현저하게 개선시키고,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온 무역 창조 효과를 한층 더 제고시키며, 역내 산업체인, 공급체인 및 가치체인을 융합시킴으로써 역내 경제의 자유로운 유동을 촉진시키고, 회원국 간 생산 분업체제를 강화하며, 역내 소비시장의 확대를 이끌고, 역내 산업 공급 가치사슬을 확대시킬 것.

■ 서구의 ‘GVCs에서 중국 배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론 하나의 쾌거

아세안 각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심화되고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연결망이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측.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국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예측. 아세안이 유럽을 넘어 중국의 제1대 무역 파트너가 된 상황에서 RCEP의 체결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 규모를 확대시키고,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며, 아울러 중국의 해외무역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예측.

■ ‘한중일 FTA’ 체결을 간접적으로 추동할 것. 바이든 시기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일본과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기회. RCEP 협정 이행 단계에서 미국의 간섭 우려.

■ 중국은 RCEP 주도자는 아니지만, 필경 최대 회원국이자 관건적 영향력 보유국임.

역내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중미 경쟁구도에서 유리해짐. 미국은 단기간내 RCEP에 가입하려 하기 보다는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미국은 종종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이간해왔는데, 만일 미국과 RCEP이나 CPTPP에서 일정한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의 음모를 깨뜨리고 중국에게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 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승리라고 분석.

- 중국의 CPTPP 가입 제안의 정치적 의도

첫째,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무역질서” 옹호. 중국 자신의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유무역질서의 수호자 이미지 창출.

둘째, 미국 주도의 CPTPP내 구성원들 갈등 조정.

셋째, 미국의 부도덕성 저격.

# [토론문] 메가아시아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전과 쟁점

2021. 9. 10.

조선대 무역학과 이종하

2011년 ASEAN이 'ASEAN(10)+3+3' 체제의 RCEP을 제안한 이래 2012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었고, 2020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 국가가 정식 서명하면서 8년간 협의는 일단락을 맺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세계무역을 다소 위축되면서 GVC도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의 타결은 역내 국가간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는 물론, 역내가치사슬(RVC)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은 한국이 참여한 최초의 메가 FTA이며, 최대 규모의 FTA라 할 수 있다. RCEP 참여국의 총 무역규모는 2019년 기준 5.4조 달러에 달하며, GDP 합계는 26.3조 달러 규모이고, 성장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RCEP 참여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생산, 무역규모 및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RCEP은 회원국 간 20년에 걸쳐 90% 이상 관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공동의 원산지 기준 구축과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챕터를 도입한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첫 무역협정이라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RCEP은 과연 15개 국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발효시한인 2022년 1월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인가? 8년간의 협상과정에서 다자간 협의의 특성상 이견이 많아 민감한 품목 혹은 분야에 대한 개방도가 기대보다 크게 낮아졌고, 전반적인 규정에 대한 구속력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소한 ASEAN 회원국 6개 국가와 비ASEAN 회원국 3개 국가가 비준해야만 협정이 발효되는데, 자국의 상대적 이익 혹은 불이익 문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회원국별 비준이 지연되면서 RCEP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RCEP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과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제문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은 RCEP 협정문을 통해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구체적 사항들과 향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RCEP 협정문은 2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는데, 한·아세안 FTA에는 미포함된 전자상거래(chapter 12)와 지적재산권(chapter 11)에 대한 논의와 원산지 관리 기준의 표준화(chapter 3)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은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무역거래의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와는 다른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간 상거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 의무규정의 성격으로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기존의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따라 가이드 라인 또는 협력방안 제시에 그쳤다면 RCEP은 의무규정 성격으로 이전보다 더 강화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 국제 이동 자유화’와 ‘데이터 제한 주권 존중’이라는 다소 모순된 가치를 표방함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에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무역거래에 대한 규범을 상품무역협정으로 할 것인지, 서비스무역협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중인데,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미국이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2019년 10월)을 시작으로 향후 디지털통상규범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둘째, 지적재산권 도입은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 및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재권 침해 시 구제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의 다른 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나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에 대한 구속력이 낮은 것은 장차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원산지 기준 표준화는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구축 및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RCEP 참여국과 체

결한 FTA가 각각 다른 원산지 기준을 갖고 있어 수출기업이 이를 활용하는데, 복잡하고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의 간소화로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개선이 기대되고, RCEP 참여국 전 지역에 대한 누적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어 생산기업으로서는 RCEP 역내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규범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분야의 포괄적 자유화를 채택함으로써 시장자유화 규범을 강화했고, 투자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인 핀테크와 금융 및 통신사업진출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역내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개선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RCEP의 시대적 의미와 이상과 같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 또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한 논의를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즉, RCEP의 협상범위가 WTO 규범에 따라 관세철폐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비관세무역장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내 경제통합이 진전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역내 국가들의 높은 비관세무역장벽(예를 들면,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국내 규제, 기술규제(TBT) 및 검역조치(SPS), 통관 및 각종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RCEP의 타결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일부의 문제는 해소되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관세무역장벽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 타결된 조항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여전히 있다.

둘째, RCEP 회원국가들이 대체로 개발도상국이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역내 회원국 간 혹은 역외 국가들과의 반덤핑분쟁에 대응하는 역내 규범도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보고서(2016년 9월 판결)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제로잉<sup>1)</sup>은 금지하지만 무역거래를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로 구분하고, 비패턴거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결

---

1) 제로잉(Zeroing)은 덤핑관세를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 계산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Zero)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상된다.

과적으로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덤핑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WTO 회원국들은 자국산업의 보호 혹은 피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요건만 맞으면 비대칭비교를 통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것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역내 국가간에도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CEP 역내 국가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덤핑마진 산출시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는 역내 기준을 정비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대응방안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RCEP 참여 국가 중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Mega FTA 규범의 내용과 범위가 상이해 상충되는 부분, RCEP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CPTPP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노동, 투명성 등의 부분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